CONTENTS

칼럼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_김남근 2

초점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_이동화 6
MBC 파업 – '부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_임명현 20
6 · 2 지방선거와 선관위 _류제성 24

사법 제대로 보기 헌법재판소의 업무방해죄 합헌 결정을 바라보며 _강성준 48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 _최강욱 54

법률 바로 세우기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보며 _박주민 60

시론 우리를 가두는 것들 _박래군 64

법률창고 이재정 회원 항소심 무죄 판결문 68
2008년 촛불과 민변의 변론활동 평가 _송상교 76

민변의 활동 4월 월례회 :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_녹취 및 정리 : 김란아 90
공부모임 : 『통섭』 _정리 : 좌세준 114

회원이야기 울릉도에 다녀와서 _고윤덕 126

성명 및 논평 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삽화는 정수우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글 _김남근 회원

아파트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높은 분양가에 있다. 부동산 거품은 특정할 수도 없고 터져 보아야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마냥 빚을 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빚도 결국은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 주택가격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듯이 높은 분양가에 있다. 부동산 거품은 특정할 수도 없고 터져 보아야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마냥 빚을 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빚도 결국은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 주택가격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유엔 주거기구는 적절한 주택가격의 지표로 PIR(Price to Income Rate)을 제시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연평균소득대비 3-4배가 적정한 주택가격이라고 하고 있다.

도시가구 근로자 연평균소득은 연 4,000만 원 정도이므로 수도권에서 적정주택가격은 그 3-4배인 1억 2,000만원에서 1억6천만 원선이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공급면적 33평) 이하의 주택가격은 서울 도심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4-5억 원에 달하고 지방에서도 2-3억 원이 넘고 있다. 결국,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부동산거래가 실종되어 있는 현재의 경직된 부동산시장은 부동산가격이 실수요자들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하향안정화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뛰어들 때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정부정책이 현재의 높은 부동산가격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부동산가격의 급락과 같은 경착륙은 경제위기를 초래하므로 경계해야 하겠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안정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2008년부터 2조원 미분양아파트 매입, 양도소득세 감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많은 건설사 지원책을 펴 왔지만 여전히 미분양아파트는 전국적으로 공식통계상으로만 11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가격 끌어올리기 내지 유지정책이 결국 건설사들과 다주택보유자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기대어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심리만 조장하여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정부재정과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되었다.

2008년부터 가격하락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지금쯤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의 부동산도 일정한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은 정상화되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가격은 30% 가까이 하향 안정화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4월말 다시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과 건설사 미분양주택 3조원 매입 등 잇따른 특혜정책을 내놓고 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다주택 보유자들인데, 결국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가격 하락기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아 그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으로는 미분양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해제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700조원에 달하여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가계부실로 인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를 더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판돈으로 놓고 벌이는 큰 도박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모험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되고 지난

가계부실에 대비한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은 그 대출방식이 3~5년의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갚다가 3-5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있다.

2~3조원의 공적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그 재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을 확충하여 현재의 위험한 변동금리방식의 대출을 장기모기지론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실을 예방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효용이 클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글 _이동화 회원

지난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씨는 한국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별보고관은 방문 기간 동안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선관위,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와 헌법재판소, 국회의원들을 면담했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인권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여성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민형사상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출국 당일인 17일, 자신의 12일 간의 조사활동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총 9페이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한국 조사방문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채택됨으로써 일련의 특별보고관 조사 방문 활동은 마무리 된다.

이번 한국의 경우와 같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은, 조사기간이나 이후의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당사국이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힐 여지가 있다. 때문에 당사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그리 달갑지 않은 반면, 당사국의 NGO, 노동조합, 피해자들 측에서는 자국의 인권침해사례를 유엔의 독립 인권전문가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실 이번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을 위해서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단체들은 2008년 7월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 6월 후반 촛불집회가 경찰과 검찰에 의해 대대적인 탄압에 내몰릴 때, 민변과 참여연대,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민가협 등의 단체는 한국에서의 촛불탄압사태를 유엔특별절차[1] 내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고문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긴급청원서(Urgent appeal)를 제출하여, 각 특별보고관의 성명발표 및 한국 조사방문을 요청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초에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와 민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인권네트워크[2]가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_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도전"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였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심포지엄의 두 번째 날에 국제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이라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별보고관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3박 4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온 발제자와 한국의 준비자들은 특별보고관에게 각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특별보고관도 한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보급율과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 나라에서의 사이버상의 표현 제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당시 마지막 날, 특별 보고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한국에의 공식 조사방문을 언급하였고 그 후 7개월 만인 2010년 5월 5일에 한국을 '공식방문' 하게 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작년 국제심포지엄에서 NGO들은 조중동의 시장독점과 막강한 영향력을 설명하며 신문법 · 방송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좌파단체 사람들만 만나고, 정부 측과 소위 균형 있는 단체 인사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편파적인 활동을 하였기에 유엔 특별보고관 자격이 없다"는 기사를 실었고, 그 다음날 동아의 사설과 조선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이다. 이 내용은 자연스레 특별보고관에게 전달이 되었고, 당시 소위 좌파(?) 측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측과 국제활동가들, 국제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등을 만났던 특별보고관은 동아일보의 오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1) 유엔 특별절차란 현재의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시절부터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핵심적 제도로써 특정한 인권침해를 주제별로 다루는 주제별 특별절차와 특정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국가별 특별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31개의 주제별 메커니즘(Thematic mandate, 특별보고관), 8개의 국가별 메커니즘(Country mandate)이 있다.

2) 2009년 3월에 결성된 네트워크로 유엔의 인권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변국제연대위가 간사단체역할을 하고 있다. 그 성원단체로 민변, 민주노총, 공감,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민가협이 있다.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방문 사실이 확인되었던 2010년 2월 초부터
전년도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했던 국제인권네트워크의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새롭게는 진보넷과 사랑방이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모임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거나 침해를 받고 있는 총 29개의 단체들과 연대체가
이명박 정권 2년 동안의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상황을 담은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 50여 일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표명하며 자신은 그 누구와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물론 당시 기자회견 때나 올해의 공식방문 때, 조중동은 특별보고관의 기사를 전혀 내보내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방문 전까지 NGO 단체들의 대응

유엔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방문 사실이 확인되었던 2010년 2월 초부터, 전년도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했던 국제인권네트워크의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새롭게는 진보넷과 사랑방이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모임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실무모임에서는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에 대한 NGO측의 목표를 ① 한국의 인권상황을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알리고,② 국내 단체들 간의 상호연대를 통해 서로간의 침해현황을 공유하여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하며, ③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로 남긴다' 로 정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몇 차례의 실무모임을 통해서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하는 1차 간담회를 3월 11일에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유엔의 인권메커니즘과 유엔특별절차, 특별보고관에 대한 기초지식을 공유하고, 이번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단체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995년도의 특별보고관 방문[3] 때 코디네이터로 활약했던 이성훈 인권재단 이사장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1995년

도의 경험을 나누며 확실한 전략과 목표를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 그에 따라 참석 단체들은, 특별보고관 측에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NGO 공식보고서' 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여, 3월 하순까지 요약본을 제출하고, 4월 중순에 본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일정을 설정했다. 이후 실무단위에서는 몇 차례 더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단체와 개인들에게 공식보고서 작성요청을 하였고, 4월 21일에 한 차례 더 전체 NGO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에 특별보고관 측과 진행된 사항들을 점검하여, 각 단체와 개인들이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를 점검하며 보고서의 양과 질을 균질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거나 침해를 받고 있는 총 29개의 단체들과 연대체가 이명박 정권 2년 동안의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상황을 담은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약 50여 일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2010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4]

최근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08년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방

3) 1995년 당시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는 한국에 공식 방문을 하여 5일 동안의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차기년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분쟁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이 부분은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이 보고서는 총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과 11분야를 포함해 총 12장으로 나눠져 있으며. [1장 총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표현의 자유 현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고, [2장 사상 · 양심의 자유]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으로 인한 침해를 다루었으며, [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형사처벌, 미디어법 개악이 가져온 언론의 다양성 파괴, 영화와 문학 영역에서 침해된 표현의 자유를 [4장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사례, [5장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담았다. [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는 강화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가져온 직간접적인 검열이 어떻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지, [7장 알권리와 접근권]에서는 공적 정보 및 미디어 대한 접근 제한을 다루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어를 통해 구금된 이들(8장), 청소년(9장), 장애인(10장), 성소수자(11장)의 실태를, 마지막으로 [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어떤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는지 정리하였다.

한국은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most wired) 국가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의사와 표현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잠재적인 범죄 장소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가장 잘 통제된(most controlled) 국가이다.

송,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노조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심지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를 정권의 통제 하에 두려는 움직임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권은 종교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그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무력화시키고 관변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상적인 의사표현과 집회결사 자유에 대해 집요한 전방위적 통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1996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도 폐지 권고를 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직자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글을 쓴 언론인이나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하고 있다. 또한 친정부 성향의 단체나 개인의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한국은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most wired) 국가이지만,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의사와 표현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잠재적인 범죄 장소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가장 잘 통제된(most controlled) 국가이다.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권리행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글 하나 올리는 데에도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관철시켜, 웹 유저들 및 네티즌들, 언론인은 익명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결국 위축효과(chilling effect)와 직간접적인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있다.

셋째, 생존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의 집회에 공권력을 투입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을 비롯해 기본권 행사를 위해 저항하는 시민, 인권활동가를 업무방해 및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사회적 이슈의 이슈성이나 갈등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사회 불안요소나 갈등유발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가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그리고 빨갱이 혹은 다른 이데올로기적 낙인찍기를 통하여, 그 민주주의적 기초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한국의 예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현 자유의 새로운 장으로서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극단적인 통제의 장이 될 수 있는가도 한국 정부는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갈등의 표출을 모두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을 훼손하는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낙인찍는,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통치기술을 한국 정부는 구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모델은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전환기의(transitional) 혹은 오랫동안 정착된(long-established)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관행(the worst practice), 혹은 '재앙' (disaster)의 관행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공공성보다는 시장경쟁 극대화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것이 지상파 방송 탓이라고 생각하고 집권 초반부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진행시켜왔다.

사상 · 양심의 자유

전(前)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과 유엔 자유권 위원회,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 수차례 폐지 권고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국정원)의 민간사찰내용을 폭로한 한 시민단체 간부에게 '국가' 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국가를 원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의하여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들에게 파면과 징계조치를 하여 국가와 공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 들어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현과 의견은 강력하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8년에 국방부는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의 저서를 포함한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여 영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중 2명을 파면하면서 군인들의 알 권리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를 내렸다.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공공성보다는 시장경쟁 극대화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것이 지상파 방송 탓이라고 생각하고 집권 초반부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진행시켜왔다.

이를 위해 방송정책 총괄기구의 대표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KBS와 MBC, YTN 등 주요 방송사 사장에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들을 앉힘으로써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했다. 〈PD수첩〉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출연자들을 교체하였고, 명예훼손 ·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다룬다.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은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집시법 관련 구속자는 증가하였다.
2009년에 접어들어 경찰은, 집회시위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남용했다.

하기도 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공공영역을 축소하고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또한 정부는 영상 표현물에 관해서도 과도한 행정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면, 과도한 벌금과 상영장 영업정지를 겪게 된다. 상영등급분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해당 행정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추천 없이 상영할 경우 위 처벌규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다.

'한국작가회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이 가해졌다. 대표성 지닌 작가들에 대한 표적 탄압과 미미한 사안에도 가해지는 법적 제재 등이다. 현기영 소설가, 김남주 시인의 작품집 등을 금서로 지정하고, 용산참사 장례식에서 시를 낭송하는 송경동 시인을 기소하였으며, 황지우 시인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사퇴를 종용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책을 출판한 일로 김남일 소설가는 피소 상태에 있다.

집회 · 결사의 자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 최종견해 1차(CCPR/C/79/Add.6, 25.Sep.1992)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의 이행에 대한 제한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했고, 최종견해 2차(CCPR/C/79/Add. 144, 1 Nov.1999)에서 "서울의 주요 도로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광범위한 권리제한"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UPR 한국 정부 보고서(A/HRC/8/40) 심의 후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의 계속된 권고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법이 아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며, 유의미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집시법 외에도 형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다룬다. 집회시위 자유의 억압은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강화되었고 집시법 관련 구속자는 증가하였다. 2009년에 접어들어 경찰은, 집회시위를 행사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남용했다. 2009년 1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5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7~8월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참조)은 경찰 폭력의 극단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9 예산지침'과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라는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단계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2009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3개 조직의 시국선언에 관한 논의와 신문광고, 야 4당과 함께한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국민대회'에의 참석을,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위의 3개 공무원노조가 조직통합을 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려하자, 정부는 통합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자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지도부 18명을 파면,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탄압을 이어갔다. 2009년 6월 18일, 교사 17,000여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와 형사고발조치 지침을 내렸다. 7월 3일 새벽, 경찰은 전교조 본부 및 서울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하여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으며, 개인 다이어리까지 압수해 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교사 28,600여명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와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지만, 교과부는 7월 31일, 전교조 간부 89명에 대한 징계방침(파면 1명, 해임 21명, 정직 67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교조 집행부 800여명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대상자 전원의 전자메일 수색, 휴대전화 추적 등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하였고, 2010년 1월 25일, 영등포 경찰서는 시국선언 수사과정에서 정치활동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를 계속했다며, 전교조 간부 190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혐의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영등포경찰서는 2010년 3월 2일, 전교조 조합원 18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했으며, 3월 29일에는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2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가 강화되었으며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인터넷 이용자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였다.
경찰이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삭제되고 있으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글을 쓰도록 허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어 왔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한국에서는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전 정권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하였고 비공개율은 5%증가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 · 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구속 · 수배는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로 구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것은 노조법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법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왜곡된 법 해석이 남발되어 상당수의 파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영업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 청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에, 불법파업이라는 멍에가 쓰이면 수억 내지 수십억에 이르는 손해배상 추궁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경기도 평택에서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사태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5월 22일 공장점거 파업을 전개하자, 회사 측은 경비용역을 고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경찰에 의한 강제진압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방패, 곤봉, 3단봉, 심지어 테이저건으로까지 무장한 25개 중대 2500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노동자를 진압하였으며, 공중에서는 최루액을 쏟아 부었다.

94명의 파업참가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었고, 2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총 192억 원의 손해배상이 쌍용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개인, 연대한 사회단체에 청구되었고, 28억 9천만 원이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상대로 신청되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최근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가 강화되었으며 허위의 통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인터넷 이용자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였다. 경찰이나 국회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삭제되고 있으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글을 쓰도록 허용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하고,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여당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정보접근권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한국에서는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전 정권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하였고 비공개율은 5%증가되었다. 또한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는 22%에 불과하였고, 경찰의 공개는 전 정권에 비하여 13%이상 감소하였다.

1999년 통합방송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들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도입되었고, 전국 각 지역에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갑작스런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후,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 · 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하였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은 특별보고관의 공식 조사활동을 사찰하였고,
이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찍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각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이 사실을 외교부에 항의하였고, 외교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정원과의 연관을 거부하였지만
한국의 언론사에 의해 국정원과 연루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지원금의 중단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미디어센터들인 RTV, 공동체라디오방송, 미디액트와 같은 단체는 사실상 운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이다.

취약계층(구금된 이들,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ATCIIAct)은 구 「행형법」(CAAct)이 전면개정된 것이지만, 교도소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서신수수와 집필물을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할 수 있는 등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 후,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 · 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하였다.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들이 미디어나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서, 2010년 2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집회시위 예정지 주변에서 장애인을 억류함으로써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활동보조인을 연행하거나 보장기기 이용을 막는 등, 장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체포 및 해산 과정에서의 폭력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보장기기와 분리하는 등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제작에 참여한 퀴어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에서 '유해성'과 '모방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려 차별적으로 상영에 제한을 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던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가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오히려 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와 특별보고관의 조사방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GO 단체들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특별보고관에게 4월 말 송부하였다.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있던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측에서는, 이 보고서와 그전의 요약본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며, 실무 단위에게 정식으로 NGO 연락담당 역할을 요청하였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은 공식조사방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케줄과 면담인 · 면담기관 · 면담장소는 외교부에서 담당하여 조율을 하지만, 특별보고관에게 접수된 그간의 정보를 토대로, 특별보고관은 NGO들이 주장하는 사건과 그에 대한 피해자,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는 단체나 전문가들, 노동조합, 언론기관, 언론인, 지방 측의 스케줄을 실무단위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실무단위도, 그간의 4개 단체에서 천주교인권위, 코쿤, 국제엠네스티, 민주노총 활동가와 이성훈 인권재단 이사로 확대하여 전체적인 실무와 NGO와의 비/공식 조사, 피해자들과의 조사, 광주지역 단체 연결 등의 밀착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5월 3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특별보고관 어시스턴트로 온 모모코 노무라 씨(Ms. Momoko Nomura)가 입국하고, 5월 5일에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 씨(Mr. Frank Ra Rue)가 입국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방문이 시작되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외교부 측과 전체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NGO와의 조사시간 이외에 특별보고관 측과 대면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있는 일과시간 이외에 아침 일찍 혹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① 엔지오들과의 공식적인 조사시간의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② 정부기관이나 관계자들을 만나기 전후에 특별보고관이 반드시 물어야 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질의목록'을 전달하였고, ③ NGO 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서면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하였다. 다행히도, 이미 특별보고관과는 2009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놓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모모코 씨와는 사전에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별보고관이 조사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은 특별보고관의 공식 조사활동을 사찰하였고, 이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찍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각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이 사실을 외교부에 항의하였고, 외교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정원과의 연관을 거부하였지만, 한국의 언론사에 의해 국정원과 연루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인권선진국'이라 떠들고 다니는 이 정권의 또 다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억압을 우려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정보유포금지조항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행정처분조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으며, 형 · 민법상의 명예훼손죄, 집회의 자유 훼손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방문 기간 동안 16개 정부기관, 법원, 대법원, 선관위,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관계자들과 면담하였으며, 구치소도 방문하였다. 더불어 5월 8일, NGO들과 하루 종일 공식적인 조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앞서 보고서를 제출한 29개 단체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시각적 자료를 섞어 브리핑하여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별보고관 측은 관심을 가진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하였고, 정부 측에서 다른 정보를 받으면 NGO들에 추가 질의를 하는 성실한 모습을 조사기간 내내 보여주었다. 또한 공식적인 조사시간 이외에 피해자들과의 개별미팅, 광주지역단체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NGO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는 태도를 취했다.

기자회견과 향후과제

특별보고관은 12일 간의 공식적인 조사방문일정을 마친 5월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총 9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기자회견문[5] 을 발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을 언급하기 이전에, 한국 정부의 고위급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표현의 자유의 일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을 인용하여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억압을 우려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정보유포금지조항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행정처분조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으며, 형 · 민법상의 명예훼손죄, 집회의 자유 훼손, 선거 시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보안법의 폐해,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유지와 미디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위원선정,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경향을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는 NGO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주요 표현의 자유 침해사항들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와 아주 흡사한 것으로, 일부 몇 가지 주제(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취약계층의 실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자회견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는 작성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까지 꾸준히 엔지오측에서 관련 상황과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는, NGO들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보고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자회견문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정부는 무관심의 자세로 일관하며 이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려 하였다. 특히나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시도하려 했던 정치적 활동은 시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몇몇 실무단체는 과도한 노력으로 인하여 특별보고관이 출국하자마자 활동력이 고갈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유엔 특별보고관 작업에 참여하였던 소수의 몇몇 단체는 특별보고관에 대한 큰 기대로 인해 실망을 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짧은 경험으로 비춰보건대,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다른 특별보고관에 비해, 인품에서부터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에까지 월등히 뛰어났던 훌륭한 보고관이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특별보고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것을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 6월에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이끌고 가서 유의미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운동을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NGO들의 몫인 것이다.

5)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문 전문과 그 번역본은 민변 홈페이지 자료실 (http://minbyun.org/?mid=data_01&document_srl=31142&listStyle=&cpage=)에서 찾을 수 있다.

MBC 파업 – '부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글 _**임명현** MBC 보도제작국 기자

올해 초의 일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에 대한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칼럼이 경향신문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다.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이때 경향신문의 막내 기자들이 기명으로 발표한 성명을 기억한다. 가장 선명했던 건 성명의 제목이었다. "이명박은 조질 수 있고 삼성은 조질 수 없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이 자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언론의 현실을 주목했다. 그러나 나는, 그 선명한 제목을 보며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뭇 다른 현실을 씁쓸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자본과의 싸움이라는 전선에서 후퇴해 권력과의 전선으로 되돌아간 현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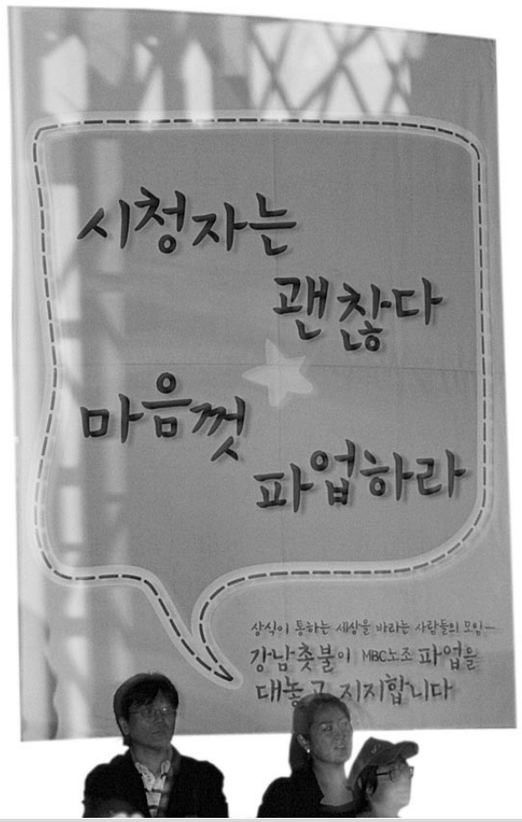

방송뉴스도, 자본과의 싸움을 고민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전 정권 때였다. 당시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는 방송도 막힘이 없었다. 오히려 큰 벽은 자본이었다. 스포츠취재부 시절, 9시 뉴스에 할애된 45분 가운데 37분을 월드컵과 WBC에 할애하는 걸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기자가 삼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 그 기자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전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현실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자본은 그 틈새나 비리를 자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정형적이었고, '시청률'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달라졌다.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어느 일요일, 서울에 2.6cm의 눈이 왔다. 객관적으로 폭설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기상청의 예측과 달리 내린 눈이어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 교통이 온통 마비됐다. 이 뉴스는 당연히 톱뉴스가 돼야 했다. 그 전년도 11월에는 호남과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걸 갖고도 톱뉴스로 4꼭지를 보도했다. 그 전날의 톱뉴스는 '겨울 추위 성큼'이었다. 당시는 경제위기로 주가지수 1,000선이 위협받고 환율은 크게 올랐으며, DAUM에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소구력을 얻고 있던 때였다. 이런 와중에도 '날씨' 뉴스는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의 눈 뉴스는 홀대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침 UAE에서 47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를 주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MBC는 물론 어느 채널을 틀어도 온통 원전 수주 뉴스뿐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눈 뉴스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과연 이 정도의 공을 들여야 할 뉴스인가? 기자로서 겪은 지난 7년간의 직간접적 경험을 총동원해 자문해 봤지만 긍정할 수 없었다. 그랬다. 예전에 '날씨 뉴스'를 대접할 때도 시청률에만 연연한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퇴행해 버린 것이다. 자본과의 전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게 사치였음을, 나는 이날 절감했다.

MBC를 향한 권력의 표면적인 탄압은 그 전에도 많았다. PD수첩 탄압, 신경민 · 손석희 등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 탄압, 뉴라이트 인사들을 통한 방송문화진흥회 장악 등등. 그러나 '기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언론노동자로서 가장 숨 막혔던 건 은밀하고도 일상적인 권력의 탄압과 간섭,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 검열이었다. PD수첩 탄압 이후 보도국에선 '쇠고기'라는 단어가 금기시되다시피 했고, 정치쟁점화 돼버린 4대강 사업은 그 본질이 환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보도 때 여-야 균형 맞추듯 찬성-반대를 5:5로 맞춰야

권력의 검열을 받기 이전, '언론의 자유'는 본래 '부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MBC가 기자로서의 고민을 '기사'에만 둘 수 있는 곳이어서였다.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고민,
또 '사주(社主)', '광고' 등 다른 매체의 기자들이 고민하던 주제들에서 MBC의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정말 얘기 되고 필요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우리가 '얘기 되고 필요하다'고 보도했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간섭과 검열의 시대에, 큰 집에서 조인트를 까이는 사장을 수장으로 둔 방송사의 보도를 말이다.

했다.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론 자체의 '검증'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권력의 탄압과 간섭이 낳은 자체 검열 때문이었다. 그것은 MBC의 위축이었고, MBC 보도국의 위축이었고, MBC 임명현 기자의 위축이었다.

'갑'과 '을'의 운영원리로 세상을 설명하는 논리를 대보면 기자는 보통 '갑'으로 분류될 것이다. 정책이 됐든 수사결과가 됐든 신제품이 됐든 뭔가를 발표한 뒤, 언론보도가 어떻게 날 지 초조해 하며 기다리는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같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기자는 언제나 '을'이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뭔가를 조사, 추진, 기획하는 게 아니라 타자(他者)가 하는 일들을 언제나 '구경하는' 입장이어서 그랬다. 나의 분주함 여부는 늘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구경하도록 할당된 타자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이 바쁘면 나도 바빴고, 그들이 한가하면 나도 한가했다.

나는 늘 타자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보고서와 자료들을 늘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락될 뿐이었다.

그래서다. 권력의 검열을 받기 이전, '언론의 자유'는 본래 '부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MBC가 기자로서의 고민을 '기사'에만 둘 수 있는 곳이어서였다.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고민, 또 '사주(社主)', '광고' 등 다른 매체의 기자들이 고민하던 주제들에서 MBC의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실제적으론 큰 부담이 됐다. '기자로 살아가기에 좋은 이곳에서 너는 어떤 취재를 하고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가?' 스스로는 물론 회사 내외부에서 수없이 물어대는 이 질문에 대해 늘 자신 있게 대답하기란 쉽지 않아서였다. 기자는 '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갑'들이 가진 내밀하고 은폐된 팩트(fact)들을 항상 캐내서 보도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래서 '언론 자유'는 당연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이름이었다.

그 부담감이, 지금은 미칠 듯한 그리움으로 다가와 있다. 아무리 약속하고 확언하더라도,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이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이 우리에게 '언론 자유'를 계속해서 부담의 이름으로 새기도록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미 '조인트'를 까인 것 자체가 치명적이지 않은가.

정반대의 예를 들어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정말 얘기 되고 필요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을 우리가 '얘기 되고 필요하다'고 보도했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간섭과 검열의 시대에, 큰 집에서 조인트를 까이는 사장을 수장으로 둔 방송사의 보도를 말이다.

다시 경향신문 기자들의 성명을 기억한다. "이명박은 조질 수 있고 삼성은 조질 수 없습니까." 다시, '권력'의 장벽을 넘어 '자본'과의 전선으로라도 되돌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지난 39일간 파업을 했고, 또 현장으로 돌아와 있다. '언론 자유'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 그 이름을 '당연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찾기 위해.

6 · 2 지방선거와 선관위[1)]

글 _류제성 회원

1. 들어가며

여당이 낙승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번 6.2 지방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뜻밖의 선거결과에 대해 많은 분석과 진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외한인 필자가 거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음으로써 정부 · 여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음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패자로 선관위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트위터에 대한 규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찬반활동에 대한 규제, 정당과 교육감 · 교육의원 후보자와의 정책 연합금지, 야권단일후보의 타 정당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나 총선, 대선에서 선관위가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아니 어쩌면 이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무리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 트위터에 대한 규제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가 젊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려 의외의 선거결과를 낳는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선관위가 트위터에 대해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텐데, 보다 강하게 막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선관위는 트위터가 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전자우편에 해당하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규제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전자우편과는 그 속성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점, 전자우편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입법취지가 정보수신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트위터는 그러한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트위터를 전자우편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는 것도 과잉규제이다.[2)]

앞으로도 트위터처럼 기존 선거법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통신수단이 생겨날 것이다. 그 때마다 선관위가 낡은 선거법으로 이를 묶으려 쫓아다니기만 해서는 선거문화의 발전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IT강국 코리아'의 체면을 깎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UCC건 트위터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선관위가 이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새로운 것이 젊은 층에 친하고,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고 진보적이어서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는 정치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 발전하는데 우리의 선거법과 선관위는 여전히 중세시대에 있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1) 이 글은 지난 5월 6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국민주권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한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 과연 선거법 위반인가?"라는 글을 토대로 수정 · 보완한 것이다.

2)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의 문제점은 필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10년 3 · 4월호에 기고한 '트위터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선관위의 방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체 및 정당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무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다. 심지어는 '선거운동'이 아닌 캠페인도 금지하고 선거법의 명문규정에 반하지 않음이 법문 자체로 명백한 경우에도 무조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억지 해석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관련 캠페인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3.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3]에 대한 규제[4]

(1)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 입장

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이 '선거쟁점'에 해당되므로 시민단체, 종교계, 정당 등이 「i)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 등의 표시물을 착용 · 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 ii)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 · 게시하거나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된다. iii)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에서 찬성 ·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7조에 위반된다. iv) 선거기간 전에 선거쟁점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이고(제254조 위반), 또한 선거기간 중에 이와 관련한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5]

이러한 선관위의 방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체 및 정당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무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다. 심지어는 '선거운동'이 아닌 캠페인도 금지하고 선거법의 명문규정에 반하지 않음이 법문 자체로 명백한 경우에도 무조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억지 해석을 하고, 그에 근거하여 관련 캠페인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 선거운동의 자유 최대보장, 최소제한의 원칙

민주국가에서 선거와 선거운동이 지니는 헌법적 의의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6]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7]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알 권리가 갖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제한은 엄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원칙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찬반활동이 설령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초점이 있다. 게다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선거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3) 선거법 소극적용의 원칙

특정 행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그 주체, 기간, 방법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특정 행위를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 즉 선거법 적용대상 바깥에 두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아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선거법의 규제대상을 좁힐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선관위의 개입과 규제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왔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8]처럼 선

3) 편의상 선관위가 문제 삼은 4대강 · 무상급식 관련 시설물 등 설치 · 게시 · 배부,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서명활동, 집회개최 등을 통칭하여 '캠페인'이라 한다.
4) 이하 내용은 민변이 지난 4.30. 선관위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
5)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4.26.
6) 헌법재판소 1995.5.25. 93헌마23 결정, 1996.3.28. 96헌마9,77,84,90(병합)
7) 헌법재판소 1994.7.29. 93헌가4,6(병합)
8) 헌법재판소 1994.7.29, 93헌가4,6(병합)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 전에라도 합헌적 법률해석원칙에 근거한 선거법 소극 적용의 원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수용 · 확립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폭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만을 특별히 선거쟁점으로 지칭한 것은 정부 · 여당과
야당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두 쟁점에 대한 찬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 ·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거의 공정은 선거자금의 규제, 금권 및 관권의 개입 차단, 언로의 개방을 통한 흑색선전 · 허위사실 유포의 차단, 후보자간의 무기대등의 확보를 통해 달성해야 할 일이다. 막연히 선거의 공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선거의 공정으로 포장된 특정 세력 편들기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거법의 또 다른 해석원칙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거법의 적용대상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선거법 소극 적용의 원칙 또는 선거법 축소 적용의 원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해석원칙은 비록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도7488 판결에 의해 파기되기는 했지만, 그 원심인 서울고법 2004.10.19. 선고 2004노1871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 바 있다.

> 어떤 행위가 법의 문언적 · 형식적 해석에 의하여 외형상 법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미미하고 반대로 이를 허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법이 금지하는 행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법을 탄력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면서도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해석이 될 것이다.

즉 선거법상 제한 · 금지규정의 입법목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바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 전에라도 합헌적 법률해석원칙에 근거한 선거법 소극 적용의 원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수용 · 확립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폭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에 의해 사장된 위 판결이 선거법 해석의 기본원칙으로 격상되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날이 일찍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하에서는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지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의 선거법 위반 여부

1)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이 선거쟁점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찬반활동은 선거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선관위는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이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그에 대한 찬반활동은 선거법 적용대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시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단지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관한 찬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기간 중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과 같다.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니는 선거의 의미와 역할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무엇이 선거쟁점에 해당하고 무엇이 선거쟁점에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만을 특별히 선거쟁점으로 지칭한 것은 정부 · 여당과 야당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두 쟁점에 대한 찬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 ·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이용하여, 즉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같아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의 목적, 형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라 선거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일반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선거 시기가 임박해 정치적 쟁점화된 사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찬반 논의가 제기되었던 사안이며 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예전부터 관련 활동을 전개해왔다. 즉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단체활동일 뿐 이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종교계나 종교단체의 경우, 4대강 사업이 자기 종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그 교리를 신도와 비신도에게 알리는 것도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

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 등이 4대강이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캠페인을 주도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한 듯하다.

단지 선거쟁점에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제9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최소한 현수막 등의 문구나 그림 등 표현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선거법 제9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 등의 표시물을 착용 · 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마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단체 등이 4대강이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캠페인을 주도한다는 점, 동 캠페인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한 듯하다.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의미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할수록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게 되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을 처벌하는 제256조제2항제1호아목의 '선전물' 이라 함은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외모가 기재 · 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단지 선거쟁점에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제9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최소한 현수막 등의 문구나 그림 등 표현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선거법 제9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간 선거법 제90조 위반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질의회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상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별명(포청천)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거기간중 선거구안에서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1995. 1. 27.)

> 일반 채권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후보자의 명의를 기재하여 대금지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당해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밖이라도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0. 3. 29.)

9)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4355 판결,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도1242

선관위의 유권해석들로 볼 때, 선전물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특정 후보자의 당선 · 낙선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만 선거법 제90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우수 아파트단지를 선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경우 표지석에 단순히 포상내용을 게재하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 사진 · 활동상황 ·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5. 3. 29.)

정당이나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대선후보자 전원의 사진을 동시에 액자제품으로 제조하여 시판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997. 10. 16.)

시민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퇴진 운동의 시기 · 장소 · 대상 · 방법 · 내용 ·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도지사의 낙선이나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05. 12. 9.)

특정 후보자가 자신의 상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별명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거기간중에 선거구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995. 6. 23.)

단체가 특정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이하 "녹색후보자"라 하며,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전단을 살포 또는 녹색후보자에 관심을 갖도록 도로상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환경보전의식이 없는 후보자 배척을 위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밝히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 · 낙선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00.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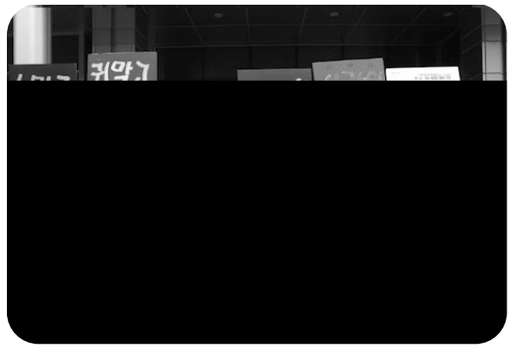

위와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들로 볼 때, 선전물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특정 후보자의 당선 · 낙선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만 선거법 제90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목적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 ·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선관위는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 ·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 · 게시하거나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앞부분 즉 인쇄물 배부 · 게시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 뒷부분 즉 광고는 제9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우선 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②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 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을 배부 ·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목적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는 한,
단순히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의견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제93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함으로써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10]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지 않는 한, 단순히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의견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제93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판례도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면서, 설령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외형이나 내용 그 자체로 보아 당해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해서는 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11]

> "선거법 제93조에 의하여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 · 도화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취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문서를 배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문서에 그러한 내용 ·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한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외형이나 내용 그 자체로 보아 당해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문서는 위 법조항 소정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관련 헌법소송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서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2] 둘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이 구체적 예시에 의하여 그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함으로써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 · 반대하는 내용으로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 되는지 여부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정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쟁점과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찬성 · 반대를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동 규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5)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에서 찬성 ·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반" 되는지 여부

> **제107조(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10) 헌법재판소 2001.12.20. 2000헌바96
11) 광주고등법원 1996.4.26 선고 95노71
12) 헌법재판소 2007.1.17. 2004헌바82결정, 조대현 재판관의 반대의견 참조
13) 헌법재판소 2009.5.28 2007헌바24.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 운동'이라고 하여 선거운동과 구분되는 '유권자운동'의 개념을 삽입하든지, '공직후보자에 관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까지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선거법 제90조, 제93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반해 선거법 제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서명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단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제107조 위반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①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위하여(특정성), ②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목적성), ③ 능동적이고(능동성), ④ 계획적인(계획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14]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선거'란 그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선거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후보자'란 반드시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입후보하려는 자도 포함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15] 그리고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란 당선 또는 낙선의 가능성과 무관하며,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한다.[16] 문제는 이러한 개념요소들로도 선거법상 규제대상인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사표시 등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말과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불명확한 요소가 있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17] 그러나 '선거관련 의사표시'가 어디까지 합법적인 '단순의사'이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구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그 판단을 집행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과잉으로 침해한다.[18]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운동의 개념요소인 특정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목적성은 내심의 의사를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태양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수 없으며, 능동성, 계획성도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한 그 개념이 모호하다.[19]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선거에 있어서 의견개진은 후보자의 선택에 대한 동조를 의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정치표현의 자유에 있어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20]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론으로 적어도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 운동'이라고 하여 선거운동과 구분되는 '유권자운동'의 개념을 삽입하든지, 선거법 제58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선거운동에 관한 원칙규정으로 하는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21] 그리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까지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22]

이처럼 선거운동 정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14) 이부하 「공직선거시 낙선운동에 대한 헌법적 평가」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1호 2009년 198p~214p
15) 대법원 1975.7.22. 선고 75도1659
16) 이희훈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과 당선운동에 관한 소고」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2004년 145p~170p
17) 헌법재판소 1994.7.29. 93헌가4,6(병합)
18) 강경근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 개념의 헌법적 문제」고시연구 2000년 3월호(통권 제312호) 14p~20p
19)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9년 1p~28p
20) 「유권자의 참정권 ·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2.4.
21) 강경근 앞의 논문
22) 이부하 앞의 논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도 규제하지 않으며, 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
유권자를 후보자를 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면,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자제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헌론을 차치하더라도, 선관위가 선거법 제107조 위반이라고 본 서명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6) "선거기간 전에 선거쟁점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인지 여부

>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 신문 · 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삭제

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전에 법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집회의 목적과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거법 제254조 위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집회가 아닌, 단지 선거쟁점에 관한 찬성 ·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법 제254조 위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금지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의정활동보고를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정치 신인과의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하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간 지나친 경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제한은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23]

우리 선거법은 일본과 같은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후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선거일 후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미국 ·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도 규제하지 않으며, 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고 있다.[24]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 유권자를 후보자를 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에 비해 신인 후보자의 대두를 막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25]

이런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4대강 · 무상급식 캠페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금지한 것은 더욱 자제했어야 한다.

7) "선거기간 중에 선거쟁점과 관련한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23) 헌법재판소 1994.7.29. 93헌가4,6(병합), 헌법재판소 2005.9.29. 2004헌바52 등
24)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9p
25) 이성환 「선거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헌법실무연구회 제8회(2000.3.10) 월례발표회 발표문

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집회는 모든 집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모이는 것 자체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 큰 집회로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법문상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선거운동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내용의 집회만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대 대의민주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고,[26] 집회에 대한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를 목적으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집회가 아님에도 단지 선거쟁점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집회를 선거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다.

4. 정당과 교육감 · 교육의원 후보자와의 정책연합 금지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대표자 · 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과 교육감 · 교육의원 후보자간의 정책연합을 금지하였다.[2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 ② 정당의 대표자 · 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 · 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
>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관위는 위 규정을 근거로 정당 · 정당 간부 · 정당소속 후보자 등이 교육감 후보자와 혹은 그 역으로, 정책연대를 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 ·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심지어는 정당소속 후보자가 유권자로 하여금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 평가하여 공표하는 행위조차 금지했다. 정책연합을 금지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지방선거 후보자와 지방 교육감 후보가 무상급식 실시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위 규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 규정이 금지하는 것 역시 '정당 대표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인데, 앞서 본 것처럼 특정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지 ·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관하여 정책연합을 하는 것을 선거관여행위라고 보는 것은 과잉규제이다. 이 역시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게 유리한 무상급식이라는 쟁점이 부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26) 헌법재판소 2009.9.24. 2008헌가25결정
27) 헌법재판소 2003.10.30. 2000헌바67 결정 등
28)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그미 등에 관한 운용기준 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0.3.16.

5. 야권단일후보의 타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29]

선관위는 정당간 후보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자가 다른 정당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른 당 후보가 범야권단일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88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30] 그리고 특정 교육감 후보가 선거구역이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특정 교육의원 후보를 지명하여 연대하는 것도 선거법 제88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2010.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의 입법취지는 후보자간 담합행위 및 매수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31]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는 각 정당이 공히 주요 선거전략으로 삼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가 소속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간 담합이나 매수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오히려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의 결과를 알리고, 그에 따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는 행위일 뿐이다.

과거 유사사례와 비추어 보아도 선관위의 방침은 부당하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후보가 '정권획득후 각료구성 등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DJP연합이 당시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2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최종영)는 이는 정당간 자연스러운 선거공조의 방법으로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성사한 것에 대해서도 DJP연합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문제되었고, 선거대책기구에 다른 정당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당법 위반이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제시할 선거공약을 정당 간에 조율하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정당 간의 선거공조기구를 둘 수 있고, 이러한 정당 간 선거공조기구는 정당간 대등한 입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정당 내부기구로서의 선거대책기구와는 달리 정당의 당원이 당적을 가지고 선거공조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 5. 31. 판결 2003수26)

따라서 야권단일후보의 타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법 제88조의 입법취지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 및 과거 유사사례에 비추어 너무나 부당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는 각 정당이 공히 주요 선거전략으로 삼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가 소속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간 담합이나 매수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6. 선관위의 직무유기

선관위는 이처럼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월권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의무는 방기했다. 경찰청장의 교육감 선거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후보의 선거공보물 방송을 대량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공보물 누락 사태를 빚었으며,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사퇴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18만표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9) 이 부분은 지난 5.24. 발표된 「야권 단일후보의 타 후보 지원행위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민변 의견서」를 상당부분 참조하였다.
30) 「정당간 후보단일화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5.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1) 헌법재판소 1999.1.28. 98헌마172결정

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경찰청장의 교육감 선거개입 사건[32]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은 2010년 4월 16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에 6월 2일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하였다(최초 언론보도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일선 경찰청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추후 보도 등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급 직원인 피고발인1이 사건 문서를 작성 ·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의 문건을 통해 경찰은 진보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해 '좌파 후보'라 지칭하면서 '학교 ·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무상급식 · 후보 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전교조 ·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금 · 조직적인 면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나가는 측면까지 함께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1은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33]

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34]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이 부하 공무원에게 소위 좌파 후보의 선거전략, 좌파세력들의 좌파 후보에 대한 지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 등을 파악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좌파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함으로써 좌파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교육계의 선거대비 전략',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여당인 한나라당)과 가까운 성향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인 반전교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이용하여 일선 경찰들에게 이 사건 문서를 하달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없는, 위법한 정보수집을 지시하여 강제한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언론보도로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마지못해 그 사실을 공식시인하면서도 '경찰청 본청 정보과의 경감급 직원이 상부의 결재없이 임의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직무규율이 엄정해야 할 경찰이, 적법한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나 승인없이, 일개 경감급 직원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일선 경찰청 정보과에 하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문서가 경찰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재 시스템상 상부의 결재없이 공문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32) 이 사건에 대해 민변은 지난 4.27.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였다. 이 부분은 동 고발장 내용을 상당부분 참조하였다.
33) 「'서울교육감 선거 정보수집' 문건」연합뉴스 2010.4.21
34) 헌법재판소 2008.5.29. 2006헌마1096결정

선거의 자유란 단지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혹은 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이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후보자와 유권자가, 유권자와 유권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연대하고, 알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거의 자유이다.

경찰청 해명의 진위를 밝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경찰청은 민주당 김유정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경찰청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치욕이 아닐 수 없으며 무너진 조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민변과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이 사건을 선관위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2) 공보물 누락

한편 선관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무더기로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후보는 지난 5월 3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35] 그 외에도 일부 출마자들의 공보가 누락되거나 통째로 배달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하였다.[36] 선거운동의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하에서 선거공보물은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임에도, 선관위가 공보물 발송을 게을리한 것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3) 사퇴후보 표시 누락으로 인한 무효표 논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퇴후보가 83명, 등록무효가 23명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였다. 심상정 후보가 눈물을 머금고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 투표수 453만4771표의 4%가량인 18만3387장의 무효표가 발생하였다. 이에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과 재투표 주장이 일자 유시민 후보가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이런 주장을 거둬 달라는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다.[37] 선관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 하더라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6. 맺는 말

선거의 자유란 단지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혹은 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이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후보자와 유권자가, 유권자와 유권자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신과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연대하고, 알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거의 자유이다. 이런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선출된 대표라야 진정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라 할 것이고 이런 대표들로 운영되는 국가라야 진정 민주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가 선거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도대체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지만 특히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선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다 무거운 의무를 진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부당한 행태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결코 잊어버리거나 용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선거관리위원이 되느냐이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법과 제도가 후진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정신에 맞게 선진적으로 운용한다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선관위원이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도덕성과 전문성은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35) 전성훈 · 안홍석 기자 「서울교육감 후보 공보 누락' 선관위 고발」연합뉴스 2010.5.31.
36) 송진식 · 황경상 기자 「공보물 관리 허점투성이… 빼먹고, 겹쳐 오고, 아예 안오고」경향신문 2010.6.1.
37) 김경탁 기자 「유시민 "무효표 논란, 더 부끄러워진다"」시사서울 2010.6.4.

헌법재판소의 업무방해죄 합헌 결정을 바라보며

글 _**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2008년이었다. 6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월말 여권 갱신을 신청했다. 그런데 구청 전산신원조회 결과 미회보로 통보되어 경찰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았다. 출국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아 다급한 마음으로 알아봤더니 '지명통보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랜드 관련 사건으로 사진채증 되어 몇 번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07년 7월 27일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 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였다. 출국하려면 일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신원조회 관련 통보를 해야 구청에서 여권을 갱신할 수 있단다. 출국 여부가 담당 경찰의 성의에 달려 있으니 기꺼이 조사에 응해서 경찰이 원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2008년 8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 변론요지서는 탄원서 정도로 쓰면 되겠고 벌금도 150만원이니 변호인을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사건'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집시법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랜드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그 취지에 동감해서 연대한 것이었고 해당 집회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저지하려는 쟁의행위였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라는 업무방해죄로 헌법이 기본권으로 선언한 쟁의행위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은 이런 물음에 답을 주지 않았다. 판사는 매장점거를 계속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함으로써 손님들의 출입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어디에도 당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를 따지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봤는지는 모르겠다.

그것보다 더 서운한 점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일단 전제하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여부만을 따졌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까지 따져 준 것도 아니고 정당성 판단 하나로 그쳤는데, 정당성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쟁의행위가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바로 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기각당한 후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원으로 공을 넘긴 헌법재판소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므로…(업무방해죄의 적용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봉쇄된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나름대로 시도했다는 해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며 노동법 제4조의 정당행위 규정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점잖게 지적하기는 했다. 어떤 언론은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과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실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한정위헌 결정에 대

국가인권위의 2007년 연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2006년 1심 판결에서 쟁의행위 사건 죄의 개수 7624개 중 업무방해죄가 2304개로 30.2%를 차지했다. 집시법이 7.5%, 노동조합법이 3.2%인 점에 비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 대법원의 거부 입장(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등)을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다. 아무리 평화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손쉽게 '불법 파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법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의 2007년 연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2006년 1심 판결에서 쟁의행위 사건 죄의 개수 7624개 중 업무방해죄가 2304개로 30.2%를 차지했다. 집시법이 7.5%, 노동조합법이 3.2%인 점에 비하면 압도적인 다수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만도기계 파업과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 파업도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도 검찰은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파업을 불법화하고 지도부를 구속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 명목으로 96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총 1만1563명의 조합원을 해고, 정직, 감봉 등으로 징계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심리 중이지만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을 선언하지도 않고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헌법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은 이상 법원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는 요건에 대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런 관문을 통과하여 정당행위임을 인정받든지, 헌법재판소가 권하는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의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 적 없는) 노동조합법이 될 것인데, 그것도 전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그래서 합헌적인 쟁의행위와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같은 말이 된다) 어차피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공안법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를 따진 부분만은 아니다. 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궁금했다. 헌법재판소는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1998년의 결정을 원용한 2005년의 결정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했다.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라는 개념만큼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개념도 없다. 형법에는 여러 곳에서 업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성격과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업무가 행위주체와 관련된 경우로 업무상 과실사상의 죄,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고 둘째, 업무가 행위 상황과 관련된 경우로 아동혹사죄가 있으며 셋째, 업무가 보호의 대상인 경우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있다.

첫째 경우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같이 그 주체를 일정한 자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비밀도 업무처리 중에 지득한 것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업무' 개념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경우는 '업무'가 단지 행위의 요소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광범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그 광범위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업무'를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규정하면 사람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는 '업무'라는 접미어를 갖다 붙이지 못할 곳이 없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약칭 '언소주')의 소비자 운동이 그러한데, 더 나아가 수입품 덜 쓰기 같은 운동도 외국 정부의 수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행위까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일단 간주하고 다만 정당행위 요건을 따진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한편, 과거 판례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토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의 실체는 중립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즉 재산권에 불과하다. 기소권을 가진 권력이 사용자의 업무방해는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업무방해는 처벌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업무' 개념의 광범위성에 있는 것이다.

지를 경작한 경우(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1956),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유림회의(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2501),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폐석을 운반하는 선박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대법원 1996.11.12. 선고 96도2214)처럼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가 아닌 적법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범위에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의 개념을 넓혀 놓았으면서도 '업무'의 개념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지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업무' 개념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법조문이 좀더 '깔끔' 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사법관행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는 예외 없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사측의 직장폐쇄나 일방적인 휴업조치를 (내가 과문한 탓인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사측의 '업무'만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는 '업무'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인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위력'이고 사측이 가진 인사권과 경영권은 '위력'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의 실체가 중립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즉 재산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소권을 가진 권력이 사용자의 업무방해는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의 업무방해는 처벌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업무' 개념의 광범위성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의 형법이 계수한 일본의 형법에서도 드러난다. 1880년 일본 구형법이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는 △곡류 등 식용물의 매매 △농공업 △농공 고용인의 임금증액 등 △고용주의 임금 감액 등에 한정되었다. 이를 현행 형법으로 개정하면서 제출된 '형법개정정부제출안이유서'에 따르면,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므로 "개괄적으로 규정하여 일체의 경우에 대응함으로써 누락의 염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업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창출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전쟁에 저항했던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일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포함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수한 한국의 형법이 '업무' 개념의 모호함을 유지하려는 이유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함으로써 사측의 재산권을 편파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사측의 재산권이란 실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땀 흘린 업무의 결과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침묵할수록 업무방해죄가 가지는 공안법제로서의 성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을 거론할 때 갈구하는 '상식'과 '감정'이 바로 노동자의 침묵이라고 본다면 과한 일일까?

재산권과의 조화인가, 노동기본권의 우위인가?

앞서 언급한 쟁의행위 정당행위 요건에 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줄기차게 쟁의행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주체'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머물러야 하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단다. 이런 잣대로 보면 이 사건 이랜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해고자도 아닌 계약해지 된 자들이 마트 매장을 점거하여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해 사측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해쳤고 게다가 점거농성이라는 폭력까지 행사했으니 헌법의 보호 범위 바깥에 있을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자. 당시 투쟁은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찬반투표라는 강요된 냉각기간과 파업돌입 선언까지 다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듭 거절하며 수백 명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했다. 게다가 사측은 용역경비를 고용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했고 파업 중에도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측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매장 주변에서 현수막이나 피켓 게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그리고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한 매장 점거마저 법의 이름으로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당시 사건에 '생산의 중단'이라는 파업권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해석을 붙일 수는 없을까?

국제인권기준이 노동권을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이유는 사측의 재산권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쟁의행위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떠하든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여기는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군법무관 파면 취소 기각 : ‘불온’한 판결, 시대의 역주행

글 _최강욱 회원

시대착오적 불온서적 지정과 그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벌써 20개월에 이른다. 세월은 무심하여 많은 이들은 이미 이들의 문제를 과거사로 기억한다. 설마 아직도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 결과가 ‘적절한 시기’를 찾느라 선고되지 않고 있고, 파면당한 이들이 여전히 백수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현실은 엄연한 것. ‘고3’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어느 판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방일보를 베껴내는 수준의 억지 판결을 감행한 듯하고, 법원의 판결로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던 당사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황당함과 분노에 몸을 추스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설마 그럴 리가.”는 현실이 되었다. 판결은, 헌법소원을 여럿이 하면 집단행동이고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관심과 비판을 받았으니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논리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한다. 파면처분이 있었을 때 이미 같은 말을 했지만, 판결을 받아들고 또다시 이 말을 되뇌게 될 줄은 진정 몰랐다.

천안함이 파손되니, 헌법정신과 법리조차 행방불명이 된 것인가. 일찍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세평을 접하고 약간의 우려를 하면서도, 설마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관계와 헌법정신을 이렇듯 철저히 외면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토록 큰 아픔을 안길 줄은 몰랐다. 우리는 아직 너무도 순진한 것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의무와 책임조차 일신상의 이익과 연결 지워 준동하는 자들이 여전히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은, 그 사람만은.”이라는 믿음을 갖고자 했다. 결국 그러한 믿음은 그저 철부지의 쓸모없는 기대에 불과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법관에 대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명백히 위헌적인 판결을 한 판사를, 그저 사법부의 구성원이기에 그냥 두고 넘어가야 할까. 결론을 정하고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을 오자까지 그대로 베꼈다면, 그건 분명 자질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물며 파면처분을 가한 당사자들조차, 법원에 가면 이기기 어렵겠지만 상소를 거듭하여 시간을 끌면서 당사자들을 최대한 괴롭히자는 작전을 세웠다는데, 이미 그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도 남은 꼴이 되었다.

단 한번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누가 봐도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피고 측도 헌법소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이후 언론에 시끄럽게 보도되는 등으로 군이 곤란을 겪었으니 징계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답변은 걸작이었다. “군 법무관은 장관의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헌법소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징계한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답한 것이다. 일순 스치는 재판장의 당황스런 표정을, 우리는 너무도 무모한 답변에 대한 법률가의 상식적 곤혹스러움으로만 해석하였다. 그러나 판결을 보니 그 의미는, 자신이 정리하려는 논리에 대한 공개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렇듯 정성스럽게 표현한 그의 예단에 놀랐고, 그렇듯 노골적인 예단을 알아채고 제어하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판결의 내용은 이렇다. “헌법소원권은 군인이 가지는 기본권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 행사에 있어 내재적 한계가 있는 기본권이고 군인의 복종의무에 따른 제한도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군인에 대한 기본권의 제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지시나 명령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곧 명령에 대한 거부로 해석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법리인지 궁금하고, 헌법소원 등의 재판청구권이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는 것도 금시초문일 뿐 아니라, 내재적 한계가 있는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그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부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 권리를 행사한 사람을 처벌(징계)하는 사유가 된다는 법리는 또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이어지는 판결이유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 자체로 법령에 근거하여 군 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

‘특별권력관계’ 및 국가주의 사상에 의하여 인류역사상 손꼽히는 범죄 집단을 정권 담당세력으로 선출한 독일의 경우, 새로운 군인인권법을 제정하고 군형법과 군인징계법에서는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기본권침해에 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외관상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모양을 띠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특별권력관계’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도대체 ‘법령’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지휘권의 행사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정면의 항명이 아닌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법을 택하는 것조차, ‘지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관상 명령에 불복하는 모양’을 띨 여지가 있게 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급자는 위헌적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곧 징계사유가 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특별권력관계’ 및 국가주의 사상에 의하여 인류역사상 손꼽히는 범죄 집단을 정권 담당세력으로 선출한 독일의 경우, 패전과 재창군의 역사를 거치면서 바로 위와 같은 논리로 상습적으로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군내 문화가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새로운 군인인권법을 제정하고 군형법과 군인징계법에서는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기본권침해에 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선 하급자의 복종의무위반을 강조하기보다 상급자의 합헌적, 합법적 지휘권 행사가 당연히 먼저여야 한다는 헌법의 규범적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독일에서는 부하가 국가기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휘관은 3년 이하의 징역(독일 군형법 제35조)에, 악의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조치를 취한 상관은 5년 이하의 징역(독일 군형법 제39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독일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 우리에게는 전혀 참고할 수 없는 불순분자들의 억지에 불과한 것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과 법원의 지적 수준이 나치 독일 시절의 그것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너무 뼈아프도록 참담한 것은 필자만의 심경일까. 하물며 법원의 판결에 쓰인 위와 같은 문구들이, 도저히 우리 군의 울타리 안에 헌법의 향기가 스며들 틈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것 또한 패자의 과민반응에 불과한 것일까.

이미 입이 닳도록 지적한 바와 같이, 도대체 군대이기에 헌법과 법률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어디에 있었는가? 군 지휘관의 지휘권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군대는 대한민국 헌법 너머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국가라는 말인가? 군도 엄연히 국가의 일부이자 헌법의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토론은 논리를 가장한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뿐이다. 게다가 난데없이 안보논리까지 더해지면 또다시 좌익, 빨갱이 운운하는 단말마적 외침까지 등장한다.

최초에는 ‘북한찬양 11권, 반정부 · 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권’으로 불온서적이 분류되었다가, 어느 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는 ‘북한미화 7권, 반정부 · 반미 성향 13권, 반자본주의 2권’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북한찬양 6권, 반정부 · 반미 14권, 반자본주의 3권’으로 바뀐다.

이번 판결은 소위 ‘불온서적’의 판별 및 지정 경위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베끼는데 급급하였을 뿐,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지정된 23권의 서적 가운데 헌법소원이 있은 후 한참 지나서 소위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 중 위 23권에 포함된 3권의 책이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었으니 불온서적의 심의나 판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간 국방부의 강변이었다. 이미 23권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수차 지적한 바 있다.

요약하면, 23권을 추려낸 이는 한총련이 아니라 기무사가 된다. 이는 국방부의 문건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추려낸 23권을 다시 전문가들이 심의해보아도 역시 불온하더라는 게, 그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이다. 사법심사가 아닌 행정청의 자의적 심사에 따른 금서조치도 문제이지만,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확인해야 할 문제가 또 남는다. 위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정체불명인 것이다. 위원의 숫자가 보고서마다 달라지고 제출 자료마다 달라진다. 위원장은 동일하되 간사는 위원 명단에 포함되기도 하고, 위원의 숫자는 어느 자료에는 아예 드러나지 않다가 5명이 되기도 하고 7명이 되기도 한다. 급기야는 규정에도 없는 8명이 등장하기도 했다. 심의기간 또한 들쭉날쭉하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되었다가 다시 8월 17일까지 심의했다고도 하며, 의결한 것은 8월 18일이라고도 한다. 안타깝게도 8월 17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찾아낸 착오를 정정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설명한 자료에는,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심의했다고도 한다. 물론 심의내용과 자료가 정리된 회의록은 지금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우리의 경험칙 상 7월 31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에 심의가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2~3일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심의자료를 보내 검토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리 검토하는 시간조차도 심의에 포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은 책을 구할 수 없어 처음엔 책을 구하느라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구나 최초에는 ‘북한찬양 11권, 반정부 · 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권’으로 불온서적이 분류되었다가, 어느 날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는 ‘북한미화 7권, 반정부 · 반미 성향 13권, 반자본주의 2권’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북한찬양 6권, 반정부 · 반미 14권, 반자본주의 3권’으로 바뀐다.

왜 굳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기를 고집하는지, 무엇 때문에 분류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

군대 내의 징계제도는 징계권자의 또 다른 무기이자 합법적 폭력의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있으며,
유독 이번 정권 들어 공직자들에 대한 파면은 다반사가 되었고, 법원에 대한 압박은 노골화되었다.

거나 설명이 없다. 군이 제시하는 「군인복무규율」이나 「정신문화활동규정」 가운데 어디에도 세 가지 범주의 서적을 불온서적의 예로 열거하거나 분류한 조항은 찾을 수 없다. 장하준 교수의 유명한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엔 '반정부 · 반미'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엔 '반자본주의' 서적으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심의의 실체는 오리무중이거나 급조된 허구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국방부의 설명에서 발견되는 숱한 거짓과 모순의 아주 작은 한 자락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였고 전혀 판단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국방부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없다.

군 측의 소송대리인은 안타깝게도 앞서 제시한 실천연대 사건에서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았다는 책 3권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북한의 미사일 전략』이 아닌 『북한의 우리식 문화』로 잘못 기재하였다. 허위사실들을 나열하여 어떻게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다보니 원고인 법무관들을 '피고인'으로 칭하기조차 하였다.

그런데 더 심한 코미디는 이번 판결에서도 이렇듯 잘못된 책 제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정하고 그 논리를 만들다보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재판부는 그러한 초보적 실수를 범할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 "북한의 우리식 문화"가 위 23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증거로 제출된 판결조차 제대로 훑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법률 외적인 시각에서 판단되고 재단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물며 그 판결조차 이미 헌법소원과 파면이 이루어지고 한참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본 사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판단도 어이가 없다. 판결에 의하면 당사자가 여럿인 것은 "군 내부에서 집단의 힘에 기대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었고, "군 내부의 해결노력 없이(물론 당사자들은 군 내부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건의를 하였다; 필자 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상명하복 관계를 무시하여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군인복무규율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의견을 군 외부에 직접 발표하거나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군 외부에 이 사건 지시를 비판하고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발표한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그로써 이 사건 지시의 정당성 여부를 정치쟁점화하고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군 장병들에게 이 사건 지시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까지 하였다.

시대착오적 불온서적 지정 및 금서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터 수많은 언론에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도 인터뷰한 바 없고, 원고 중 한 사람의 실명을 기재하여 기사를 보도한 기자조차 자신이 그를 인터뷰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보도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으니 징계를 하여 마땅하다는 것이다. 대체 이 땅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이제 어디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심히 갑갑한 부분이다. 이러한 수준의 헌법적 인식을 가진 재판부라면, 헌법소원 결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하지 않을까?

결국 징계로서 파면을 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거듭 밝히지만 불온서적 지정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에 대한 징계가, 파면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기재된 내용과 법무관들이 위반했다는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이 갖는 위헌성은, 아예 이 재판부의 고민에서는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설명해야하는 고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명령, 규칙의 위헌성은 분명히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한 기초적 헌법 수준의 논리조차도 어떠한 근거로 형해화 시키는지 도무지 설명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다. 글을 쓰는 내내 치미는 분노를 가누기 어렵다. 앞으로 이렇듯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해야한다는 사실이, 아니 설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 내의 징계제도는 징계권자의 또 다른 무기이자 합법적 폭력의 다른 형태로 작동하고 있으며, 유독 이번 정권 들어 공직자들에 대한 파면은 다반사가 되었고, 법원에 대한 압박은 노골화되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분노를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또한 분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진정 법률가들이 사회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실상은 어떤 존재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깊은 한숨을 거두기 어렵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것이었다. 이를 상급심에서 분명히 입증하고자 분투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기대한다.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은 법무관들에게 말이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보며

글 _박주민 회원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 명의로 발의 되어,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 법안이다. 운영위원회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전원 회의를 보이콧하였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혼자 남아 법 내용의 부당성과 입법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특히 특별법은 운영위 상정 전날까지만 해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되었었으나, 갑자기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의원실로 제출되었고,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을 정도로 기본적인 입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입법절차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위헌적이라는 점이다. 특별법은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장을 경호안전통제단의 단장으로 삼고 있는데, 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지역을 설정해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바로 집회와 시위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를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별법의 문제점 중 집회 ·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과 민주적 통제절차 없는 군대의 자유로운 동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8조에서는 이렇게 지정된 경호안전구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호안전통제단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집시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집회의 경우에도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집회 ·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모든 집회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6조), 신고 된 집회가 폭력이 예상되는 집회(제5조),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집회(제12조), 소음을 크게 발생시키는 집회(제14조)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이미 특별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8조는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어떠한 형태, 방법, 목적의 집회나 시위도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통제 없는 군대의 자유로운 동원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인력 동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호안전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군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해 준 이상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ASEM(아셈)이나 APEC(에이펙) 같은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여러 차례 치러

1) 1988년 8월 정부는 올림픽 경기시설, 선수 · 임원 숙박시설 등지에서 집회 · 시위를 금지하는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에도 없던 내용이 2010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군대를 시민사회의 문제에 개입시키지 말자는 큰 교훈을 주었고,
그러한 교훈이 우리 헌법에 남아 있다.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절차 없이
군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왔지만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논의된 바조차도 없었다1).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경우에도 "G20회의와 같은 국제회의를 한다고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형 국제회의를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문제제기 했고, "기존 법을 가지고도 질서 유지를 할 수 있고 특별히 테러나 집단 소요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경비 경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면 될 것"이라고 한 바도 있다.

특별법이 민주적 통제 없이 군대를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은 적의 침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먼저 통합방위법의 경우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또는 시, 도지사 등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지위의 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차관급에 불과한, 그리고 인사청문회 등 인사과정에서 민주적인 감시나 통제가 없었던 일개 행정 관료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법의 경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이후 국회나 시, 도의회에 즉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대해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고 조항도 없어 사후적으로나마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지 조차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법의 경우 통고를 받은 국회나 시, 도의회가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회나 시, 도의회 등의 해제요청에 관한 조항은 물론 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일단 경호안전통제단장이 군대를 동원하면 민주적 통제를 통해 동원된 군대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이 침투하여 국가가 총력전으로 이에 맞서야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통합방위법에서조차 민주적인 통제절차와 방법을 구비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전혀 그러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의 헌정사, 그리고 경험은 군대를 시민사회의 문제에 개입시키지 말자라는 큰 교훈을 주었고, 그러한 교훈이 우리 헌법 등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절차 없이 군을 시민사회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 큰 것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

마치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집회나 시위는 기본권의 행사가 아니며 범죄다' 라는 한나라당의 기본권관과 '국민은 잠재적인 폭도' 라는 폭민관 등이 다시 한 번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을 보니 영국은 2차 G20 회의 때 15,000명의 군을, 미국은 2009년 G20 회의 때 주 방위군 16,000명 동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군대의 쿠데타로 인해 민주정부가 전복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던 적이 있는지? 불과 며칠 전이 바로 5.18 광주민주항쟁의 30돌이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이 군대가 무장을 하고 시민과 대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는가? 특별법은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를 가두는 것들

글 _**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구치소 독방의 세 개의 문

서울구치소 11중 1방,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살던 곳이다. 1.1평(약 3.63㎡)의 독방은 한 명이 눕기에는 넉넉하지만, 새우잠을 자거나 두 사람 모두 비쩍 마른 갈비씨가 아닌 경우 두 명이 같이 눕기에 비좁다. 폭 약 1.35m, 길이 약 2.7m의 시멘트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세 종류의 문이 있다.

'식구통'이라고 불리는 문을 통해서는 밥과 음식이 들어온다. '배식 준비'라는 소지(사동에서 수용자들을 돕는 역할을 맡은 수용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용자들은 그 식구통으로 밥과 음식을 탈 그릇들을 준비한다.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가 배식 시간이다.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열어서 밥을 받고는 이내 닫아버린다. 특히 밤에는 꼭 뚜껑을 닫고 자야 한다. 그 식구통으로 책도 들어오고, 구매물도 들어온다. 일용할 양식은 대부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어느 방이나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다. 쇠창살이 질러진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고, 이 창문을 통해 바람과 햇볕이 들어온다. 한겨울 오후에 햇볕은 이 창문을 통과해 천장에 먼저 들어와서는 벽을 훑고 내려와 방바닥에 한 동안 머물고 간다.

보일러 온기가 가장 미약할 때인 오후 시간에 따뜻하고 환하게 방을 비추는 햇볕이 흐린 날에는 더욱 간절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한겨울 새벽잠에 깨어 창문을 통해 바라본 그 하늘에 날선 낫처럼 가늘어진 그믐달을 바라보는 건 너무도 서늘했다. 그 창문 밑에 지금은 쓰지 않는 환기창이 있는데, 그 창밖 턱에 비둘기 한 쌍이 둥지를 틀고 두 개의 알을 품고 있었다.

감방에서 가장 중요한 문은 아무래도 현관문에 해당하는 방문일 것이다. 두터운 나무문 상층부에 뚫린 직사각형의 쇠창살 쳐진 구멍(시찰구라 한다)이 있다. 이 문은 밖에서 교도관이 안의 수용자들을 보기 위해 뚫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의 시선 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이 문을 통해 면회도 가고, 운동도 가고, 검찰 조사(검취)나 법원 출정도 한다. 하지만 이 문은 안에서는 열 수가 없다. 고철 쇠뭉치 같은 쇠통이 걸려 있고, 문의 하단 밑에는 폐방 시 잠그는 열쇠가 또 하나 걸려 있다.

이 열쇠들은 모두 밖에서 따고 걸 수 있을 뿐 안에 있는 수용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 내가 보석으로 석방될 때 교도관은 이 문을 열어 석방 소식을 전해주었다. 세상으로 나오는 일도 누군가 이 문을 열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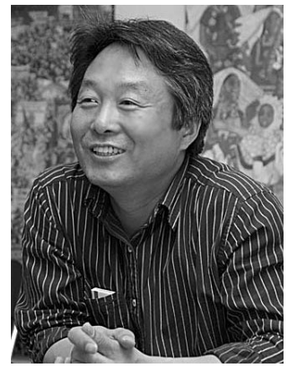

서울구치소 11중 1방,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살던 곳이다. 1.1평(약 3.63㎡)의 독방은 한 명이 눕기에는 넉넉하지만, 새우잠을 자거나 두 사람 모두 비쩍 마른 갈비씨가 아닌 경우 두 명이 같이 눕기에도 비좁다. 폭 약 1.35m, 길이 약 2.7m의 시멘트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세 종류의 문이 있다.

영혼조차 가두는 감옥들

이렇게 감방은 벽과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구성된 공간 안에 가구는 낡은 삼성 14인치 아날로그 칼라TV만 있다. 옷걸이와 빨래 건조대, 그리고 약간의 수납공간이 있다. 화장실에는 양변기와 냉수를 받을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으며, 선반이 하나 걸려 있다. 삭막하기만 한 이 공간 안에서 나는 잠자고, 일어나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서성거리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는 했다. 나의 몸뚱이를 110일 동안 가두어 두었던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신체를 가둠으로 저들은 마음까지 가두려 한다. 사소하고도 일상적이어서 보통의 사회생활에서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일이 제한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런 제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조차도 가두려 하는 곳이 감옥이다.

나는 창살 없는 감옥생활(수배) 10여 개월과 창살 질러진 감옥생활 약 4개월을 치러야 했다. 1년 2개월 동안 나는 순천향병원 영안실과 명동

성당 영안실에서는 경찰의 감시망 속에서, 감옥 속에서는 교도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지난 4월 30일 갑작스런 보석 결정으로 세상에 나와 집에 돌아왔을 때의 어색함, 바뀐 잠자리조차 불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느끼던 멈칫거림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 감시와 통제가 내면화된 사람이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다. '비록 몸은 갇혔으나 영혼만은 자유롭게!'를 주창해 왔던 인권활동가였으니 더욱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이다.

감옥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거나 영영 열릴 수 없는 문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은 갇힌 생활이 더욱 비관적일 수밖에 없고, 더러는 우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기도 하니 말이다. 그래서 몸이 갇힌 감옥에서는 더더욱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더 큰 감옥이었다. 눈에 보이는 쇠창살이 없을 뿐 구조와 체계, 제도라는 벽으로 둘러쳐진 벽으로 만들어진 감옥 속에서 사람들은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계와 공장, 일자리라는 감옥 속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라는 감옥 속에서, 장애인들은 집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옥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더 넓은 세상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평생을 살다 죽어갈 수도 있다. 관습과 고정관념, 생활습관과 생활방식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 체념과 절망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은 그 벽을 깨고, 감옥의 문을 열고 나서는 길이 두렵기만 하다.

마음의 문을 열자

아마도 '천안함' 사건이 먹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해방 65년, 한국전쟁 60년 동안 반공, 반북에 세뇌되어 버린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천안함 사건은 당연히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지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다. 당시 한미합동훈련 중인 백령도 앞 바다에는 이지스함 2척을 비롯하여 한미 해군 함정 10여 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바다 밑으로 침투하여 감쪽같이 공격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니 아마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군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자는 꼴이다. 그렇게 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던 상황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1번'이라고 우겨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외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닫아버린다. 즉 많은 사람들은 레드 콤플렉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집권세력은 이번 선거용으로 천안함 사건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조차 감옥에 가두는 벽을 보는 일이다. 견고한 벽에는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달려 있음을 보는 일이다.

이 문을 나가면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열린 자세가 아닐까. 익숙하기만 한 지금의 일상과 일과 생각 등등이 감옥은 아닐까. 벽과 쇠창살로 만들어진 감옥에서 나서는 일은 어쩌면 자기부터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세상이 괴롭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이런 출구를 찾아내야 할 것이 아닐까. 우리를 억압하는 지배세력들은 늘 우리가 체념할 것을 강요한다. 그래봤자 별 수 없다는 체념과 절망의 감옥 속에 가두려 하지 않는가.

나를 가두는 감옥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일, 우리 운동을 정체하게 만드는 감옥이 어떤 것이지를 성찰하는 일이 우선은 내가 세상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나조차도 내면화된 감시와 통제라는 벽 속에 마음을 가두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가두어두려는 저들을 통쾌하게 비웃어줄 수 있는 문을 찾아서 보란 듯이 세상을 활보하고 어깨 걸고 외칠 수 있는 그날을 그려본다. 그럴 때 나는 비로소 나는 자유를 찾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 장애인 인터넷 신문 〈비마이너〉(www.beminor.com)에 보낸 글을 수정 · 보완했음을 밝힙니다.

*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용산참사로 입건된 이들의 변호를 위해 애쓰신 민변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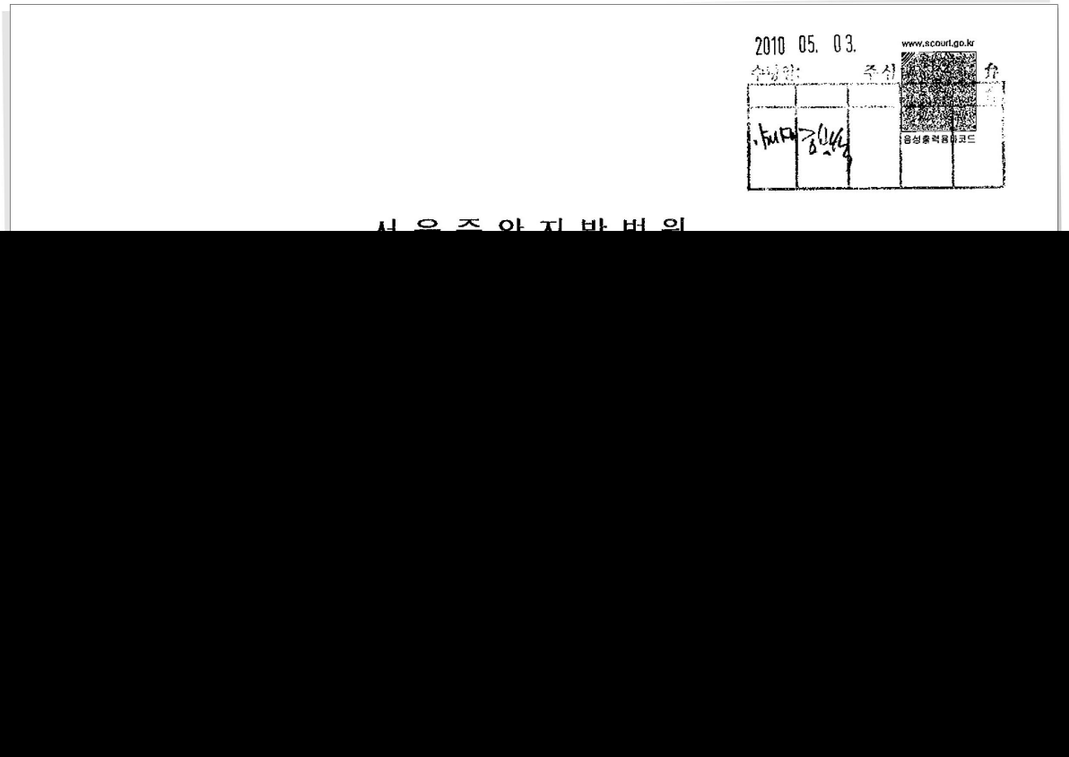
2010 05. 03.
www.scourt.go.kr
수령함:
주심
재판장
음성출력표시코드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19:18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20:10경 서울강북경찰서로 인치된 후, 2008. 6. 26. 02:43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조○○은 2008. 6. 26. 15: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였다. 조○○은 약 1시간가량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체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등 피의자신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조○○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행동을 모두 기재하였다.

조○○은 2008. 6. 26. 16:00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행동을 삭제하고 단순히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다시 출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은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수정을 원하는 내용을 볼펜으로 다시 기재하면 그 부분을 수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볼펜으로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는 한편, 조○○에게 자신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

2010-0013589048-5K7A7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www.scourt.go.kr

양은 피의자신문조서 1~2면, 3~6면, 7~10면의 3부분으로 구분되어 각 부분마다 절단면의 모양이 각기 다른 사실(각 절단면의 모양은 별지와 같다), 10면의 절단면은 모두 직선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친 굴곡이 있는 점, 1~2면의 절단면은 좌측 1/4지점에서 우측 1/2지점까지 찢어져 있는 사실[1], 3~6면의 절단면은 좌측 1/2지점에서 하단 1/4지점까지 찢어져 있는 사실, 7~10면의 절단면은 좌측 1/10지점에서 우측 1/2지점까지 찢어져 있는 사실, 피의자신문조서 총 10면은 각 찢어진 부분 외에도 종이 전체에 걸쳐 구겨져 있고, 찢어지지 않은 부분에도 심한 구김 자국이 나타난 사실, 1~2면에는 절단면 외에도 우측 부분에 일부만 살짝 찢어진 부분이 있는 사실, 7~10면에는

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면 피의자신문조서는 10면 모두 큰 굴곡 없이 직선형태의 단일한 절단면을 보이면서 찢어져 있었거나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절단면은 그러한 양상으로 찢어져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3부분으로 구분되어 찢어져 있고 절단면도 각기 달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찢었다면 조서를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찢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10면에 불과하여 두께가 얇아 3차례에 나누어 찢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절단면 부분 외에도 종이 전체에 걸쳐 구김과 일부 찢긴 흔적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서를 찢었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조○○이 조서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조서가 찢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3~6면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찢었다면 절단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찢었어야 하는바, 조○○의 말대로 조서에 간인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서를 찢었다면 간인된 인영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을 수밖에 없어 인영의 번짐 현상이 간인 주위에 나타남이 상당함에도 간인에는 번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뚜렷하게 날인되어 있는 점, ⑥ 3~6면의 경우 공교롭게도 절단면과 간인 부분이 일치하여 절단면의 한 부분에만 간인의 인영이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의 진술과 같이 간인이 되어 있는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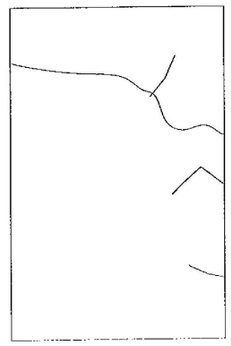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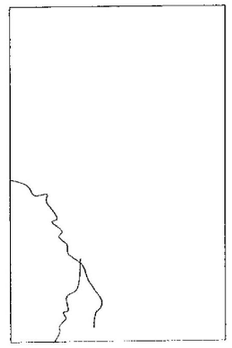

3~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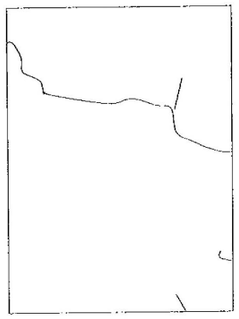

7~10면

2010-0013589048-5K7A7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008년 촛불과 민변의 변론활동 평가

글 _송상교 회원

5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행자가 발생하면서, 민변의 활동은 큰 변화를 맞았다.
이때부터 민변은 자연스럽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매일 이어진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과 '접견',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고발' 등의 활동이 그것이었다.

1. 들어가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2008년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초기부터 이에 참여하였다. 촛불은 2008년 4월 17일 쇠고기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된 후, 5월 2일 집회를 통해 점화되었다. 촛불집회는 대략 그해 8월 15일 즈음해서 사그라졌지만, 촛불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교육,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넓혀갔다. 게다가 촛불 관련 변론은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도 대다수가 진행 중이기에, 2008년의 촛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08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민변의 활동은 시기별로 몇 번의 전환점을 거쳤다.

민변은 2008년 이전부터 한미 FTA 관련 활동을 벌였으며 2008년 4월 17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초기부터 법적,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 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상 내용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조사 청원과 정보공개청구 등 법적 대응 활동을 벌였다. 이것은 고전적 의미의 전문가 활동으로서, 성격상 국민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여론을 환기하는 '연구와 대안 제시'로 언론 중심의 활동 성격을 가졌다.

한편 5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행자가 발생하면서, 민변의 활동은 큰 변화를 맞았다. 이때부터 민변은 자연스럽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매일 이어진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과 '접견', 그리고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고발' 등의 활동이 그것이었다. 이것은 대략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동안 거의 매일 진행되었는데, 민변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장 활동이었다.

변호사단체의 기본적 활동이라 할 변론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5월 말부터 이른바 '국민소송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국민청구인단 모집을 계기로, 민변과 시민들의 직접적 소통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다. 8월 이후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가 사그라진 뒤에도, 민변의 촛불 관련 활동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이후 검찰은 '촛불 연행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기소를 시작하였는데, 민변은 '약식명령자에 대한 정식재판 무료변론' 등 촛불 관련 각종 변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변은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의 한가운데에 깊숙이 뛰어들면서 많은 실험과 고민을 거듭하였는데, 이것은 민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앞으로의 방향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는 민변의 촛불활동을, 변론을 중심으로 돌아본다.

2. 민변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활동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 '문화제'는 종래와 달리,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촛불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연행 및 처벌방침을 천명하였다. 이에 민변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5월 22일 공식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 변호사, 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함)을 구성하였다.

이후 민변의 촛불활동은 이 〈법률지원단〉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5월 30일, 촛불집회에서 물대포와 경찰 진압장비로 인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권력 행사의 위험성과 위법성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민변은 효과적인 촛불 지원과 인권침해 대응을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세부 팀으로 나누고 체계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다. 법률지원단 내에 △헌법소원소송진행팀 △고소고발팀(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적 대응) △인권침해감시단 △형사변론팀 등을 추가로 구성하고, 사건의 규모와 상징성이 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변론을 위해 별도의 팀(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네티즌 과잉수사 공동변호인단 △광우병대책회의 공동변호인단 등이 그것이다.

법률지원단 참여자는 2008년 7월 2일경이 되자 75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개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이었고, 민변 회원이 아님에도 촛불집회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들은 법률지원단 내 각종 팀에 참여하고 그 외에도 촛불집회 현장의 인권침해감시활동, 접견, 변론 등 전방위적인 헌신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퇴근 후에 촛불집회 현장에 와서 새벽 내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한 후, 그 복장 그대로 사무실로 출근하는 회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민변은 연행 상황을 파악하면 법률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접견할 변호사를 배당하여 파악된 연행자 전부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변호사가 집회 현장이나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연행된 당일 밤이나 새벽에도 접견을 실시하였다.

있었다.

3. 촛불집회 연행자 정식재판사건 등에 대한 무료 촛불변론

가. 파악된 연행자에 대한 접견 실시

5월 24일 집회에서 36명이 연행된 이후, 거의 매일 수십 명씩의 시민이 집회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민변으로 연행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쏟아졌다. 민변은 연행 상황을 파악하면 법률지원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접견할 변호사를 배당하여 파악된 연행자 전부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민변 회원이면 누구나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 경기지역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연행 상황을 공지하고 접견을 요청하였다. 변호사가 집회 현장이나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연행된 당일 밤이나 새벽에도 접견을 실시하였다. 한편 6월 9일 이후로는 '구속자'가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였다. 6월 이후에는 '광우병대책회의'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연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연락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민변은 2008년 5월 25일부터 쇠고기 촛불집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8월 26일까지, 총 183회에 걸쳐 1,398명의 연행자를 접견하였다. 6월 29일 집회의 경우, 다음날까지 16개 경찰서에서 122명의 연행자를 하루에 접견하기도 하였다.

연행자에 대한 접견을 통해 민변은 촛불집회와 참여자의 실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작업도 하였는데, 예컨대 정부가 촛불집회 배후론 등을 제기하자 5월 30일 접견 결과를 토대로 연행자의 직업과 신분을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접견을 통해,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의 실태나 연행 시 위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례도 다수 발견하였는데, 이런 생생한 정보는 민변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 촛불 연행자 등에 대한 무료 변론 실시

촛불 연행자에 대한 접견은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변론으로 이어졌다. 2008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가 집중되면서, 수백 건에 이르는 변론 요청이 민변에 접수되었다. 민변은 쇠고기 헌법소원 참가인 모집 당시에 헌법소원 참가비를 기초로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촛불변론을 무료로 진행하였다.

변론요청이 폭증하면서 기존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만으로는 변론이 불가능해지자, 민변은 2008년 9월경 고심 끝에 모든 민변 회원에게 촛불변론 참여를 요청하기로 하고,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많은 회원에게 변론을 일률적으로 배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변은 무료변론에 임하는 회원에게 촛불기금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촛불 소송 지원 방안'을 세웠다. 촛불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변론을 진행하는 회원들에게도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각 변론마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촛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변론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 당 30만 원을 민변이 변호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피고인 1명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였다. 그 외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촛불집회 인권침해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형사변론 등에도, 사건 성격에 따라 담당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원하였다.

한편 처음에는 1심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사건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항소심이 열리자, 항소심에 대하여도 당사자가 원하고 변호인이 항소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촛불기금으로 1심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송지원하기로 하였다.

약식명령을 받은 시민들은 민변의 안내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민변에 사건번호와 기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면 민변 사무국은 관련 기록을 전달받아 정리하고 사건을 회원에게 배당하였다. 불구속 사건이나 구속 사건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변론을 하였다. 이 때 가급적 몇몇 회원에게 변론이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였고 신입회원에게도 배당하였다.

민변의 촛불변론 건수는 계속 늘어서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피고인 640명, 사건 238건에 대하여 87명의 변호사가 정식재판 무료변론을 진행하고, 불구속기소 사건도 피고인 64명, 사건 50건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촛불 변론 사건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 집시법 제10조 중 '시위'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 등을 이유로 기일이 추후지정(이하 '추정')되어있는 상태이다.

다. 촛불 변론의 주요 특징

⑴ 통일적 변론을 위한 노력

촛불변론이 진행되면서 거의 유사한 쟁점이 발견되었고, 담당변호사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효과적인 변론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사건이 진행되면서 회원들 사이에 보다 집중적인 정보 공유와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4월 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촛불변론을 진행하는 회원 변호사들이 '촛불변호인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로 공통의견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계속 공유하여 나갔다.

하였다. 실제 변론 참여 변호사 중에는 그간 업무상 형사변론, 특히 집시법 관련 형사변론 경험이 없는 회원이나 신입회원들이 다수 있었기에, 사무국은 2008년 11월경 '법률지원단 인권기획팀'에서 작성한 「촛불변론 매뉴얼」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회람하였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회원들 사이에 보다 집중적인 정보 공유와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4월 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촛불변론을 진행하는 회원 변호사들이 '촛불변호인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로 공통의견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계속 공유하여 나갔다. 집단적 변론 논의는 변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가 위헌제청 된 상태에서 변호인단은 대개 헌재 결정 이후로 기일을 '추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촛불변론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를 진행하되 선고기일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률적 주장만 할 경우 일부 재판부는 곧장 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일부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경우 감액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⑵ 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촛불변론은 필연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다. 피고인 측의 위헌제청신청을 계기로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이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08헌가25) 2010년 6월 말까지 잠정적용 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당장 대검철창은 당분간 집시법 제10조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임을 발표하고 경찰도 계속 적용방침을 천명하면서, 9월 26일 참여연대의 집회신고를 불허하였다.

실제 재판을 맡고 있는 하급심 재판부도 혼란에 빠져들었다. 초기에는 잠정적용 취지에 따라 집시법 제10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기도 하고(서울중앙지법 2009. 10. 9. 2009노2516등),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양형사유로 판단하기도 하였다(2009. 9. 29.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00등).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집시법 제10조 등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집시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2009고정1140). 반(反)상식의 시대, 몰상식의 시대에 상식적인 판결로서 촛불집회 및 시위 약식기소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판결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집시법 제10조 등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집시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反)상식의 시대, 몰상식의 시대에 상식적인 판결로서 촛불집회 및 시위 약식기소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판결 가운데 가장 빛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가운데 가장 빛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1)]

한편 위 08헌가25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대상을 집시법 제10조 중 '집회' 부분에 한정함으로써, 여전히 같은 조항의 '시위'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시위'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법 2009고정1136)에서 법원에 다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집시법 제10조 중 '시위'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계류 중이다.

⑶ 일반교통방해죄의 무차별 적용

촛불변론의 특징 중 하나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재발견과 남용이었다. 민변 통계에 따르면, 민변이 진행 중인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627명 중 88%에 이르는 551명이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 죄로도 기소되었다. 집시법만으로 기소된 경우는 60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경우는 52건이었다. 벌금액(약식기소 기준)도 집시법으로만 기소될 경우 평균 62만원이었으나,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벌금액은 두 배를 훨씬 넘는 평균 152만원에 이르렀다. 약식기소 된 대부분의 사건이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특별한 행위 없이 일률적인 연행 과정에서 연

촛불 정식재판 사건의 죄명과 벌금액 평균(피고인 627명 대상, 2009. 6. 15. 기준)

표

죄명	건수	벌금평균(단위 만원, 소수점이하 반올림)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491	152
집시법	60	62
일반교통방해	52	144
공무집행방해	8	200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3	50
특수공무집행방해	8	200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4	238
공용물손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1	300
합계	**627**	**148**

1) 위 판결은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위 잠정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정일인 2009. 9. 24. 이미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위헌?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촛불 시기에 가장 주목할 민변의 변론으로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들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민변에 집단소송 진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법률지원단 내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규모 집단소송을 통해, 국민의 분출구를 열어주고 소송 자체가 상징이 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였다.

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벌금액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인데 '일반교통방해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헌재는 유감스럽게도 2010년 3월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가 2). 한편 대법원은 최근에 집회·시위를 하다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다고 해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는데(대법원 2010. 5. 24. 2009도10758), 이 부분은 앞으로 남용을 제한할 보다 분명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4.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

– 민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익 집단 소송 기획과 진행

촛불 시기에 가장 주목할 민변의 변론으로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들 수 있다. 2008년 4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22일에 고시가 입안될 것이 예고되자, 민변은 쇠고기 고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초기에는 군인, 한우업자, 학생 등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청구인을 몇 명 모아 일반적인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민변에 집단소송 진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법률지원단 내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규모 집단소송을 통해, 국민의 분출구를 열어주고 소송 자체가 상징이 될 수 있는 기획을 해보자는 의견이 모였다. 그 결과 5월 29일 농림식품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게재를 의뢰하자, 민변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고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참가인단을 공개모집하였다.

청구인단 모집 시에 민변은 참가희망자에게 5천원의 참가비를 받으면서, 참가비는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사건의 진행비용,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비용,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에 관한 비용,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공개 모집 시작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청구인단에 참여하는 등 참여 열기는 처음부터 뜨거웠다.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홈페이지가 수차례 다운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3일 12시 마감 시점에는 컴퓨터 집계 상으로 103,476명이 참가하였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6월 5일을 청구일로 잡았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청구인을 일일이 정리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이들 청구인별로 위임장의 도장을 날인하는 작업을 불과 이틀 사이에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사무국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것인지를 고심한 끝에, 보다 유의미한 국민 참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에 '도장 날인 작업 자원봉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100여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가 민변에 찾아와 이틀 동안 밤샘 작업에 동참해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5일, 청구인 96,072명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이하 '미국산 쇠고기 고시'라고 함)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시는 아직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6월 26일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민변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청구인 명의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민변은 이전에 시도한 적이 없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시도를 하였다. 청구인단에게 사건의 의미와 진행 경과를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리인단은 10만 명의 청구인단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설명회 개최를 알렸다. 제헌절인 7월 17일에 맞추어 촛불집회가 열리던 현장에서 가까운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공개설명회를 열었다. 대리인단 전원이 직접 나와 사건의 쟁점을 쉽게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최병모 법률지원단장이 향후 소송진행 계획을 보고한 후 사무총장이 모집된 참가비 현황과 집행 현황, 향후 사용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는 약 300여 명의 청구인단과 시민이 참가하였고 뜨거운 질문이 이어졌다.

헌법소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적법성 요건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상위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그 내용이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과 자기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고시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위임이 불가피한 내용을 고시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국내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본안(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청구인들은 미국의 불완전한 광우병 통제시스템으로 인하

쇠고기 헌법소원은 헌재 결정의 주문만을 놓고 본다면 '패소'이나, 사실상 소중한 결과들을 획득한 점이 있다.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은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여 광우병에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권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미국에 대해 수출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는 검역주권의 포기이며, 청구인들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행복추구권, 보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장관은 이 사건 고시가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고시의 내용 또한 국제무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OIE 기준'에 의거하여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열어줄 것을 신청하였다. 변론 준비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국내외 각종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하였으며 국제법, 수의학, 보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부 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논리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지 않고 2008년 12월 26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5인 '기각', 3인 '각하', 1인 '위헌' 의견)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생명 ·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고, 자기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도 있다고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본안판단에서는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과소보호금지원칙)로 이 사건 고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쇠고기 헌법소원은 헌재 결정의 주문만을 놓고 본다면 '패소'이나, 사실상 소중한 결과들을 획득한 점이 있다.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 국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은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헌재 결정에서 합헌의 논리로 제시된 논거들은,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그 전제사실이 변동되는 경우 곧바로 위헌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청구인들이 얻어낸 소중한 성과라 할 것이다.

오프라인의 광장에서 밝혀진 촛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였다면, 온라인상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라 불린 것이었다.

5. 민변의 주요 촛불 변론들

민변의 촛불 변론은 변론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변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핵심적 이슈를 제기하고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에 언급한 집시법 제10조, 일반교통방해 위헌제청사건이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사건, 촛불집회 관련 단체 정보보조금 중단사건 등 집회 ·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건 외에도 촛불변론의 논점은 표현의 자유, 소비자운동의 범위에까지 확대되었다.

먼저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형태인 '2차 불매운동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5월경 촛불집회 과정에서 촛불집회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사의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시작하였다. 불매운동의 방식은 광고주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3개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로 수사하여 2명을 구속하는 등 24명을 기소하였다. 1심법원은 24명 전원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전원 유죄 선고를 하였고, 2심법원은 24명 중 8명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1, 2심은 2차 불매운동을 소비자운동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하면서도, (소비자운동의 기본 형태인) 전화걸기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처벌 대상으로 본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보였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주요 변론으로는 피디수첩 사건과 전기통신기본법 사건을 들 수 있다.

오프라인의 광장에서 밝혀진 촛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였다면, 온라인상에서 그 역할을 한 것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라 불린 것이었다. 명예훼손죄의 적용이야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지만, 네티즌의 글쓰기에 전기통신기본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은 촛불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검찰이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들은 고교생 휴교문자 발송 사건, 여대생 사망설 유포사건 등을 포함하여 6건이다. 법원은 이들 사건 중 고교생 휴교문자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외에 나머지 사건 모두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단을 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모두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현재는 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심사숙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촛불 이후 '미네르바 사건'에서 최근 천안함 사태에 이르기까지 네티즌의 글쓰기에 대해 소환을 계속하며 이

촛불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애쓴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민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민변의 변호사들 역시, 거리에서 시민의 달라진 반응을 몸으로 느끼면서 계속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보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사건으로 '피디수첩 사건'이 있다. M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의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협상 타결 후 촛불시위 등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거세어지는 와중에, 농림부는 방송 제작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찰 수사팀의 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검찰은 2009년 6월, 방송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남겼다.

6. 민변의 촛불 활동이 남긴 것들

가. 전문성과 현장성 결합의 중요성

민변은 참여정부를 지나며 정체성에 관한 논란을 거친 바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변 회원이기도 하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개혁세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회원들 중 일부가 국회로 진출하고 공직에 임명되어 국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시민단체로서의 민변의 위상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내외에서 많은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민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회는 민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민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민변은 '진보 · 개혁적 법률전문가 단체' 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단체의 핵심적 과제로 상정하여 왔는데, 2008년 촛불집회에서의 활동내용은 민변의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2008년 촛불 정국을 통하여 민변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물론 그 전에도 국내외 비정부기구 중 민변이 차지하는 위상은 작지 않았지만, 이전의 민변 활동은 주로 시국사건의 변론과 정책적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층 전문가단체' 또는 '연륜 있는 명망가 중심 단체' 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였다. 여기에 참여정부 이후 민변 회원이 정부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민변을 친정부단체로 매도하면서 생긴 왜곡된 상(像)도 일부 존재하였다.

2008년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민변이 국민의 주목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평가가 사실이라면,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첫 번째 요소로는 협상 타결 직후부터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함으로써 '용기 있고 날카로운 문제제기 집단' 이라는 신뢰를 얻었던 점이 있다. 이는 고전적인 의미의 전문가의 역할이다. 5월 하순 이후에 민변은 시민과의 접촉을 폭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넓혔는데, 여기에는 '국민소송 헌법소원'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한 청구인단 모집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연행자에 대한 대대적인 변호인접견과 무료변론은, 많은 국민에게 민변이 '약자를 대변하는 믿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단체' 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성과 헌신성' 의 문제이다. 민변은 5월 하순부터 촛불집회 현장에서 매일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이어갔는데, 촛불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애쓴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민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민변의 변호사들 역시, 거리에서 시민의 달라진 반응을 몸으로 느끼면서 계속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 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전문성 · 대안성(전문가집단으로서의 선도적 비판과 대안 제기 기능)'과 '현장성 · 헌신성'을 함께 유지하여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변과 같은 전문가단체의 경우, 양자를 상호 대립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는 민변을 '변호사로서의 품위나 전문성을 팽개친 운동 집단' 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동성을 가지지 못한 전문가 집단' 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어느 하나만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변 회원 중에도 연구 및 대안제기 기능에 관심을 두는 회원과 현장성에 비중을 두는 회원이 다양하게 공존한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민변이 여러 활동을 비교적 내부적 논란 없이 꾸준히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회원이 자신의 상황과 지향에 따라 두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분담하였고, 그것이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민변이 전문성과 헌신성을 겸비한 집단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민변이 대대적인 대(對)시민 무료변론을 실시한 이유는,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한 것이며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연행된 대부분의 시민이 연행 경험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나. 촛불변론이 남긴 과제

민변의 촛불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적 평가도 존재한다. 민변의 성격이 지나치게 '운동적'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민변의 역량을 넘어선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내적 성찰과 축적이 필요한 시기에 회원과 조직의 역량이 지나치게 현안 대응에 집중된 면이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촛불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헌법정신을 지향한 것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촛불 내내 울려 퍼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 가사가 이를 웅변한다. 이런 점에서 촛불 옹호 활동은, 민변이라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에게 주어진 당연한 과제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민변이 변론과 같은 활동을 앞으로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는 자신의 역량과 지속가능한 활동 방식을 냉정히 가늠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변 역시 촛불 시기 내내 이 문제를 고심하였다. 민변이 약식명령을 받은 촛불시민의 정식재판 변론과 같이 대대적으로 일반 시민을 변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어려움, 특히 촛불사건을 진행하는 민변 회원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사람에 따라서는 10건이 넘는 사건을 배당받고, 피고인 기준으로 30명이 넘는 피고인을 변론하기도 하였다. 촛불사건은 내용도 간단치가 않아서 집회 참여여부나 도로점거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법적 다툼은 물론, 법정에서의 치열한 신경전 등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회원의 피로감도 적지 않았고, 일부 사건에서는 당사자인 촛불시민이 민변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무료' 변론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민변은 시국사건에 대해 당연히 무료변론을 한다'는 과도한 기대를 주었다는 우려도 있다. 무료변론이라는 것이 민변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쇠고기 촛불집회를 통해서 민변을 알게 된 일반적인 대중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9년 용산집회건 등에 대하여 민변은 고심 끝에 '쇠고기 촛불집회' 이외의 다른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무료변론'을 하지 않고, 적절한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임료를 받고 '유료변론'을 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런 방침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변론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기금을 마련하였다. 모든 시국사건에 대해 무료변론을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변의 대대적인 촛불변론은 큰 의미를 가진 활동이었다. 민변이 대대적인 대(對)시민 무료변론을 실시한 이유는,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한 것이며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연행된 대부분의 시민이 연행 경험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변론은 촛불시민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었다. 또한 검찰이 대대적으로 시민을 기소하는 상황에서, 민변이 선별적으로 변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촛불변론 과정에서 평소 민변 활동과 소속감이 크지 않던 회원들도 변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결국 촛불변론은, 대규모 변론 과정에서 변론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변론 관리?지원시스템을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무료변론의 문제 역시 민변이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도 지속가능한 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내외 상황의 변화는 민변이 종국적으로 '소통과 네트워크의 확장'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는 숙제를 주었다.

우선, 시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홈페이지 개선과 뉴스레터 발간, 『쫄지마, 형사절차!』와 같은 대중서 발간, 상담의 실시 등과 같은 그동안의 활동을 검토·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 점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 내 소통이 중요하다.

촛불 과정을 통해 민변은 회원도 증가하고 활동 폭도 넓어졌으나, 그 범위는 전체 회원을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요구를 조직 내에서 활발하게 소통함으로써 조직의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연구와 정책기능 의 강화' 문제이다.

민변이 전문가단체라 하나 특정 영역에서 모두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각 영역마다 오랜 기간 연구와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한 단체와의 일상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당연한 거지만,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편중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서, 모든 국민이 한 채씩 가져도 집이 남는 시대에
도달을 한지 몇 년이 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 이상이 집이 없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반 이상을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게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진보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무심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사는 최소단위인 '동네' 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분들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같이 부여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하는 방식으로 운동의 내용이나 방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동네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 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제가 사는 성동구에 대한 자료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마장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거생활에 관한 조사–어떤 집이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셋방에 사는지 집을 갖고 있는지, 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지, 지하실에 사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나마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 외에 볼 수 있는 항목이 학력, 종교생활 등이었습니다. 주로 주거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동네를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갖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이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릅니다. 산업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걸어온 길을 보면, 10년에 한 번씩 가격이 수직상승하고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채 유지되다, 다시 10년 후에 다시 오르고 하는 방식으로 계단식 모양을 그려왔습니다.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 불패신화' 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결과 당연한 거지만,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명동에 가면 파스쿠치라는 커피전문점이 있는 자리의 공시가격이, 한 평에 2억1천5백만 원입니다. 한 평에 2억이 넘는 땅이 그 일대 충무로까지 해서 최소 12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죠. 심지어 남한 땅을 팔면, 면적이 100배인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다는 통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경북대 이정우 교수님께서 90년대 초에 발표한 통계입니다만, 작년 말엔가는 '우리나라를 다 팔 필요도 없이, 서울하고 경기도만 팔면 캐나다를 살 수 있다' 는 통계를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할 정도로, 우리나라 땅값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의 소유편중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받을 때, 법인이나 문중, 종교단체 소유를 제외하고 순전히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자료만 제출받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1,083채를 갖고 있습니다. 최상위 100명이 1만5천 채를 갖고 있고, 이렇게 소유가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죠.

땅의 경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는 30% 정도입니다. 59%의 국민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5.5%의 땅 부자가 사유지의 3/4 가까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21.5%가 25%를 갖고 있어서, 이 둘을 합치면 사유지의 99%를 27%의 땅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1%에 나머지 32%들이 오글오글 살고 있습니다. 이 32%의 국민이 이제, 자기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에 달린 부속 토지가 뭐 한 7~8평 되는 사람들이고, 40%의 국민은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살고 있는 거죠. 건물의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많이 오르고 비싸고, 소유의 편중이 극단적으로 벌어져있고, 이 세 가지가 버무려져서 부동산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만 되면 집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매겨봤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313만 채를 지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분이 잠도 자지 않고 1분에 한 채씩 집을 지었습니다. (웃음)

최근 20년 동안 새로 지은 집만 1천만 채가 넘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있던 집을 헐고 새로 지은 집이지만, 굉장히 많은 집을 지었죠. 그 덕분에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0%가 되었습니다. 110%란 얘기는, 모든 국민이 가구당 집 한 채씩을 소유하고도 140만 채 이상이 남아돈다는 얘깁니다. 물론 여기에 1인 가구가 빠져있다든지, 또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그건 이제 분모에서 제외가 되어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서, 모든 국민이 한 채씩 가져도 집이 남는 시대에 도달을 한지 몇 년이 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 이상이 집이 없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반 이상을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날수록,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숫자도 늘어나고 그들이 보유한 주택 수도

일본을 토건국가라고 부릅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도 건설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서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선진국 구조로 나아가는 데에,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구조가 큰 발목잡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집을 2채 정도 가진 경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치더라도, 3채 이상부터는 실수요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주택 중에 270만 채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이 높은 나라의 순서입니다, 대부분 후진국들이죠. 적도기니 같은 경우는 전체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이 57%로, 이 나라 산업의 대부분이 건설업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세계 14위로 건설투자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일본을 토건국가라고 부릅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도 건설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서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선진국 구조로 나아가는 데에,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구조가 큰 발목잡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랑신부들에게 물어보니까 결혼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하던데, 시간이 갈수록 주택마련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산율 감소를 비롯해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내집마련 계획을 먼저 이룰 것인지, 자식을 먼저 나을 것인지.

제가 10년 전 통계를 보니까, 자식을 하나 낳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만 두(頭)당 1억이 든다고 하더군요. 둘 낳으면 2억이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내집마련 계획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내집마련 계획을 먼저 이루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주택가격은 너무 비싸고 소득과 벌이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길도 굉장히 험난하죠.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 가계 기준으로, 최소한 쓰고 최대한 저축해도 자기 힘으로 33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전국 평균으로 19년이 걸린다는 것이 2006년 8월 기준의 발표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을 나오니까, 남자의 경우 군대를 나와서 졸업을 하면 스물여덟인데, 청년실업을 거치지 않고 천연기념물처럼 바로 취직을 하고, 안 잘리고 계속 그 직장을 다녀도, 27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울은 가격이 더 비싸 29년이 걸리니 57살이 되고, 나는 죽어도 서울시 강남구에서 사야겠다고 한다면 44년이 걸리니까 72살이 되어야 강남구에서 33평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어야'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로 부동산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거죠.

제일 고통 받는 사람들은 극빈층들이죠. 2005년 기준으로, 지하실에 사는 사람이 59만 가구 142만 여명이고, 옥상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사는 분들까지 하면 68만 가구, 16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동굴을 비롯한 지하공간에 거주하기 시작한 건, 역사책을 보면 50만 년 전의 베이징 원주민부터라고 합니다. 21세기에 세계 11대 경제대국에서 땅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악화되어서 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거생활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부동산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학력고사 점수가 달라진다고 하는 통계는 뭐, 고대 김경문 교수가 거의 십 몇 년 동안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 해도 어긋나지 않고 있죠. 사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경제적 부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서 고3 졸업생 천명 대비 서울대 입학자 수가 구(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통계입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234개 시군구별로, 5년 동안 땅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통계와 그 동네에서 사람이 몇 살에 죽느냐 하는 것을 통계 표준화한 것인데, 거의 뭐, 귀신이 곡할 정도로 땅값이 많이 오르는 곳은 잘 안 죽고, 땅값이 잘 안 오르는 데는 빨리 죽고, 234개 동네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더 신경 쓰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이런 것이 중간에 징검다리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소득과 부와 이런 것, 부동산이 수명과도 연관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계 재산 중 평균 83%가 주택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하면 가계재산 중 89%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기준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굉장히 높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은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라는 것으로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재는데, 소득과 자산의 빈부격차를 비교해본다면 자산이 거의 3배 이상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격차는 더욱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빈부격차를 비교해본다면 자산이 거의 3배 이상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격차는 더욱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격차를 볼 때, 빈부격차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격차를 볼 때, 빈부격차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무리를 가른다면, 실제 사람들에 존재하는 생활의 격차, 삶의 격차, 살아가는 총체적인 격차의 뼈대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셋방 사는 분들의 절대다수가 5천만 원도 안 되고, 3천만 원, 1천만 원,
혹은 보증금도 없이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현실적인가? 그리고 셋방 사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내집마련 중심으로만 가면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급별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동산 가격 정책에 대한 계급별
호불호가 다릅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주거생활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주거생활의 격차와
투표행위의 격차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미일 가계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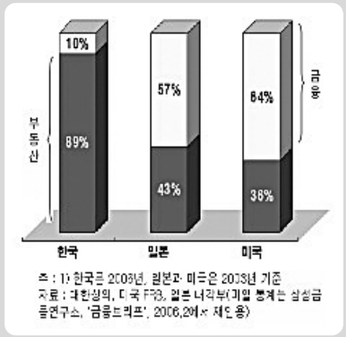

주 : 1) 한국은 2003년, 일본과 미국은 2003년 기준
자료 : 대한상의, 미국 FRB, 일본 내각부(개별 통계는 삼성금융연구소, '금융브리프', 2006.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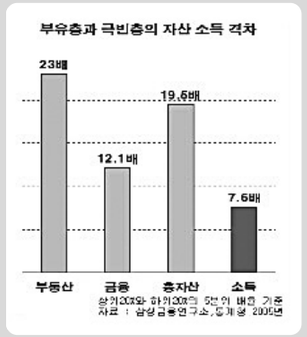

처음에 말씀드린 계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좀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싼 거 갖고 있는 사람은 2계급으로 낮추고, 한 채 갖고 있어도 좀 비싼 건 1계급으로 올리고, 그렇게 고쳐봤습니다. 3계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놓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이죠.

여기서 조금 주목되는 것은, 셋방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 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95만 가구 정도 밖에 안 되고 전체 가구 대비 6% 정도죠. 이분들은 대부분 다수가 수도권에 사시는데, 이 중에 절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건 2005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집값이 더 올라, 더 높아졌을 테죠.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해본 것은, 셋방 사는 분들의 절대다수가 5천만 원도 안 되고, 3천만 원, 1천만 원, 혹은 보증금도 없이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현실적인가? 그리고 셋방 사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내집마련 중심으로만 가면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빌린다더라도, 최소한 집값의 절반 정도는 있어야 도전을 해본다고 하면, 나머지 재산이 없고 보증금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5백만에 가까운 가구,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급별로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1계급은 굉장히 많은 불로소득을 올리겠고, 2계급도 상당히 좋아지지만, 3계급은 좀 헛갈리겠죠. 사둔 집은 오르는데, 전세가격도 오르니까요. 4~6계급은 집값이 오를수록 손해입니다. 거꾸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1계급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만약 집값이 반 토막이 되면, 1,083채를 사두신 분은 인생이 상당히 좀 위험해지겠죠.

그러나 4~6계급은, 단순논리로만 말하면,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거죠. 3계급은 이때 또 헛갈리겠죠, 자기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금은 낮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급별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동산 가격 정책에 대한 계급별 호불호가 다릅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주거생활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주거생활의 격차와 투표행위의 격차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 학력 – 종교가 사이좋게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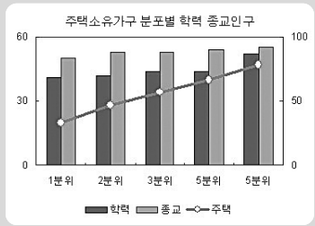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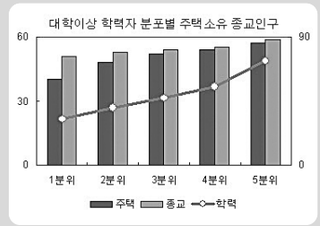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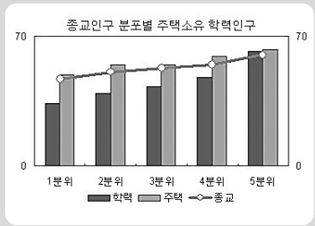

주거를 중심으로 학력과 종교생활의 통계가 들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동네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세 가지 통계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를 봤는데, 주택소유가구 분포별로 학력과 종교를 봤더니 수도권에서는 거의 같이 갔습니다. 집주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학력도 높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았고, 무주택 가구가 많은 곳에선 학력도 조금 떨어지고 종교를 가진 사람도 조금 적어졌죠. 학력을 중심으로 해도 같이 갔고, 종교를 중심으로 봐도 같이 갔습니다.

동네 속으로 들어갔더니… '강남 속 강북' 이 보였다

강남도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남은 25개 구 중에서, 학력도 높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고, 직업도 좋고 사업자도 많고, 자가용 두 대 이상 가진 사람도 많고,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도 많죠. 그런

**동네로 들어가 보면 통계가 엇갈리는데, 강남 안에 있는 스물 몇 개 동네 중에,
강남다운 강남이 있었고, 강남답지 않고 강북 같은 동네도 상당히 여러 동네가 발견됐습니다.**

데 유별나게 셋방 사는 사람도, 관악구하고 어디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3계급이 유독 많은 동네가 강남입니다.

동네로 들어가 보면 통계가 엇갈리는데, 강남 안에 있는 스물 몇 개 동네 중에, 강남다운 강남이 있었고, 강남답지 않고 강북 같은 동네도 상당히 여러 동네가 발견됐습니다. 압구정1 · 2동, 대치1 · 2동, 도곡2동, 청담1동, 일원본동은 그 동네에 사는 가구의 73%가 집주인으로 무주택자가 드물었습니다. 85%가 아파트에 살았고, 1인 가구도 서울시 평균 대비 훨씬 낮았고, 지하실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20세 이상 인구 중에 87%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에, 투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로 한나라당을 찍습니다.

반면에 역삼1동, 논현1동, 대치4동, 일원1동, 수서동, 이런 동네는 평균 25%만 집주인이었고 75%의 가구가 무주택자였습니다. 34%만이 아파트에 살고 66%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살고 계셨죠. 1인 가구가 무려 38%가 됐고요. 52%는 19평도 안 되는 좁은 집에 살고 있었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낮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투표율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투표하는 사람 중에는 한나라당을 찍는 비율이 앞의 동네들보다는 훨씬 낮았고, 민주당을 더 많이 찍은 선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남 안에서도 그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투표 양상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네 속으로 들어 가보면 더 구체적인 양상이 발견됩니다. 개포3동에는 투표구가 4군데 있는데, 1 · 2투표구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아주 낮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합쳐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3 · 4투표구는 투표율이 1 · 2투표구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동네인데도,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도가 두 군데 다 평균 20%가 넘었습니다. 한나라당 득표율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2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투표구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동네 안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번지를 추적해보진 않았지만 추정컨대, 아마 3 · 4 투표구는 개포3동 저 뒤쪽에 있는 주공아파트, 좁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 투표구에 해당된다면,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집주인은 거의 없죠. 지금 재건축 대상이 되어서 노른자위 아파트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살기는 낡아서 좀 불편하고 안 좋죠. 거기 사는 분들은 거의 다 셋방에 사는 분들이고, 그래도 강남에 사는 분들 중에는 조금 덜 부유한 분들이신 거죠.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집주인이 많고,
아파트 가구도 많아지고, 1인가구는 적어지고, 반지하 가구도 적어지고, 학력은 높아지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동네에 사는 분들의 투표율을 투표구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이런 양상이 차이가 납니다.

동네와 선거 사이에 법칙이 보였다

우선 투표율과의 관계입니다.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10곳과 낮은 10곳을 보면, 주로 높은 곳은 강남권이고 낮은 곳은 강북 동네 여러 군데로 흩어져있지만,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1동, 역삼1동은 서울시 522개 동네에서도 투표율이 가장 낮은 동네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동네의 특성을 보면, 집주인 가구가 26% 밖에 안 되고,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가뭄에 콩 나듯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5%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에 살고, 1인가구가 43%, 지하에 사는 가구가 17%, 학력이나 종교 성향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 동네들은 2004년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보다 훨씬 높았고,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더 높았지만 그래도 다른 동네들에 비해서는 역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투표를 가장 열심히 하는 10군데에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이렇게 강남권 5개 구가 정확히 들어가 있죠. 이 동네들의 특징은, 거주민의 84%가 집주인이고, 14%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시고, 98%가 아파트에 사시고, 1인가구나 지하는 거의 없고, 학력은 20세 이상 인구 중에 평균 86%가 대학 재학 이상, 17%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이며, 종교생활의 비율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어느 선거에서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수도권 전체 1,164개 동네로 확대해서 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앞에 10개 동네-10개 동네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역시,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집주인이 많고 낮은 동네로 갈수록 무주택자가 많고, 다주택자 역시 투표율이 높은 곳으로 갈수록 많고, 아파트 가구도 많아지고, 1인가구는 적어지고, 반지하 가구도 적어지고, 학력은 높아지고.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한나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곳이고 투표도 잘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의 검증을 거쳐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민주당을 많이 찍은 동네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학력이 낮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고 투표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역의 관계도 성립하는가를 봤는데, 역의 관계도 똑같이 검증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투표율이 높은 동네는 대체로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볼 때 형편이 나은 동네로, 학력도 높고 종교인구도 많고, 한나라당을 많이 찍는다. 투표율이 낮은 동네는 거꾸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로, 학력이 낮고 종교인구도 적고, 대신 민주당을 많이 찍는다는 특징이 발견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득표율인데, 서울에서 2004~2006년 기준으로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를 보면, 82%가 집주인들이고 14%가 다주택자, 90%가 아파트에 살고, 1인가구나 지하는 드물며, 88%가 대학 이상의 학력, 20%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 그리고 종교인구도 굉장히 높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동네는 투표율도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로 갈수록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은 양상이 발견되었고, 이런 동네로 갈수록 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의 관계도 역시 성립하여,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들로 학력이 높고 종교 신자가 많고 투표율이 높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반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많이 찍은 동네 10군데를 추려보니 37%만 집주인이고 63%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1/10 밖에 안 되고 1인가구와 반지하 가구 비중은 매우 높고, 20세 이상 인구 중에 33%만 대학 이상 학력이고 대학원 이상은 2%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종교인구 비율도 낮았고, 투표도 잘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수도권 전체로 확장해도,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곳이고 투표도 잘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의 검증을 거쳐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민주당을 많이 찍은 동네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학력이 낮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고 투표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민주노동당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을 가장 많이 찍은 10군데에는, 주로 관악구가 2곳, 노원구가 2곳, 그리고 종로구가 1곳 끼어있었습니다. 주택 소유 비율도 낮고 다주택자들도 별로 없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서 1인 가구가 많고, 대체로 이런 가난한 동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학력이 높은 특징을 보여요. 10개 동네에서는 일단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수도권으로 확대해봤는데, 수도권 단위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숫자들이 전부 흔들리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일관된 걸 본다면 종교인구입니다. 민주노동당을 많이 찍은 동네로 갈수록 종교인구가 적어지는 양상이 보였는데,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서, 종교인구 역시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민주노동당을 많이 찍은 동네와 민주노동당과의 상관관계는 발견하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발견해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지만,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겁니다. 소수점까지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투표율이나 정당득표율의 양적 차이는 있겠지만, '동네별 특성과 투표행위와의 상관관계'는
선거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통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선거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2004년 총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총선이고 하나는 지방선거라는 특징도 있지만,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진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고, 그 탓에 투표율도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투표율이 높았고, 그에 따라 다른 선거에 비해 민주당의 득표율도 압도적으로 높았죠. 덤으로 민주노동당도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에 2006년 지방선거는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이 상당히 작용을 했고 이때 당시에 뭐, 술 취하는 것도 노무현 탓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뭐 완전히 달랐던 때였죠. 투표율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올랐죠.

서울	이유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우리)당	민주노동당
2004년 총선	노대통령 탄핵	62%	37%	46%	13%
2006년 지방선거	참여정부 실정	49%	58%	31%	10%

두 선거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인데, 이 두 선거를 비교해서 이것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일단 서울을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택소유 분포별로 투표를 봤는데요, 이것도 뭐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투표를 안 하는 동네에서 계속 안 하고, 잘 하는 동네에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동네에서, 다른 선거인데도, 투표율이 비슷하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동네의 한나라당 득표율은 어떤가를 두 선거를 비교해봤더니 역시 똑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득표율도 거꾸로 보면 역시 귀신이 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나 정당득표율의 양적 차이는 있겠지만, '동네별 특성과 투표행위와의 상관관계'는 선거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통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이런 양상과 계급배반 투표 논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의 계급배반 투표 논리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국민에게서 찾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6점 밖에 안 된다' 는 이야기를 하죠. 민주화 이후에 20년 동안, 총선을 기준으로투표율이 30%가 급락하여 46%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가 그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이 극복되지 않으면 현재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도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죠.

투표율을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단어는 딱 두 개였습니다.

촌고도저(村高都低) – 촌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고 도시에서는 잘 안 한다.

여촌야도(與村野都) – 여당은 농촌지역 득표율이 높고 야당은 도시지역 득표율이 높다.

그런데 앞에서 수도권을 살펴본 것을 보면, 도시적 특성을 갖는 동네에서 오히려 투표율도 높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촌고도저나 여촌야도로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는 다른 사자성어를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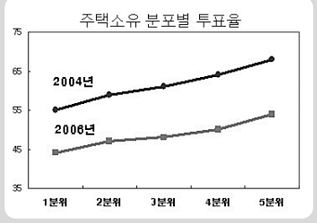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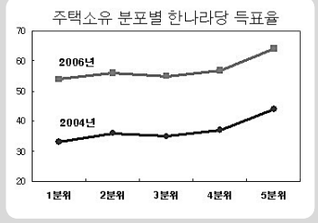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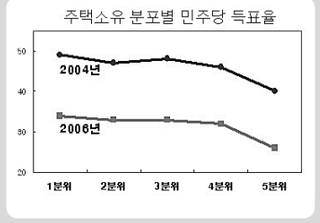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이 계급배반 투표를 해서 정치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풍미하던 말인데요. 수도권 분석으로 보면, 이것도 반드시 맞느냐 하는 물음표를 찍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는 투표를 잘 안 한다는 특징이 일단 발견이 되고, 투표를 할 경우에 한나라당은 덜 찍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이런 양상과 계급배반 투표 논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의 계급배반 투표 논리는, 정치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국민에게서 찾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6점 밖에 안 된다' 는 이야기를 하죠. 민주화 이후에 20년 동안, 총선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30%가 급락하여 46%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가 그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이 극복되지 않으면 현재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도 해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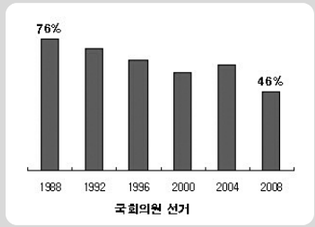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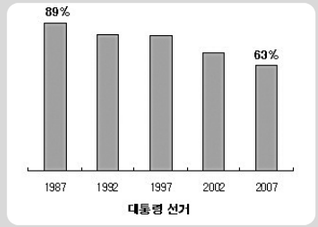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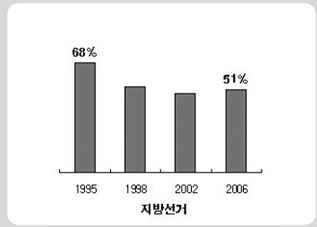

그러면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가, 그건 '누가 투표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의 분석으로 보면 가난한 동네의 투표율이 낮은데,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투표를 하려면, 하루 일당과 맞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도 개선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투표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발달해온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구성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투표제도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너무 많은 원인을 찾는 것은 실제 원인을 조금 놓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제원인인, 가난한 사람들이 왜 투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이 책의 주제와 연관 지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닙니다. 전 국민의 평균 2/3가 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특히 셋방 사는 사람들은 80% 이상이 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고, 50% 이상이 2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삿짐을 2~5년에 한 번씩 싸게 되면, 자기가 사는 동네는 사실 자기 동네가 아니고 언젠가 떠나야 될 잠시 머무를 곳입니다. 선거라는 게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대부분 우리 동네를 어떻게 해서 좀 더 잘사는 동네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별 의미가 없고 그만큼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로서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죠. 연구 성과들은 동네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선, 정치적 토론도 이루어질 수 없고 정치 참여라든지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주택문제의 해결이 주거생활 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 각 영역들과 정치까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구별 거주기간 (2000~2005, 단위 : %)

		2000년				2005년			
		2년 미만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2년 미만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전국	계	34	53	22	25	30	55	19	26
	자가	15	32	26	42	14	36	22	41
	셋방	58	79	17	4	52	80	14	6
수도권	계	40	60	23	17	35	65	19	17
	자가	20	41	29	30	18	49	23	27
	셋방	59	80	17	3	54	82	13	5
서울	계	41	61	22	17	35	65	19	16
	자가	19	38	27	35	18	49	23	28
	셋방	57	78	18	4	50	79	15	6
인천	계	35	56	26	18	32	59	20	20
	자가	19	40	33	27	16	44	26	30
	셋방	60	80	17	3	58	83	12	5
경기	계	40	62	23	15	36	66	18	16
	자가	22	44	30	26	18	51	23	26
	셋방	61	82	15	3	57	85	11	4
비수도권	계	29	47	22	32	26	46	20	34
	자가	11	26	25	49	11	27	22	51
	셋방	56	79	17	4	51	78	15	7

2년에 한 번씩 짐을 싸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한데, 2년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되어있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부동산 문제와 주택문제의 해결이 주거생활 만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들과 정치까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안내해야 될 정치세력들은, 이들을 투표장으로 안내하지 못하는가.
투표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시쳇말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장까지 가서 누구를 찍어야 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찍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찍을 정당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을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결국, 가난한 사람을 대변해야 될 정치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가. 왜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안내해야 될 정치세력들은, 이들을 투표장으로 안내하지 못하는가. 투표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시쳇말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굳이 투표장까지 가서 누구를 찍어야 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찍어야 될 지도 모르겠고 찍을 정당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투표장까지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에게,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죠.

과연 어떤 정치세력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자신이 대변하려고 하는 지지층과 잘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한나라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이들에게 정확히 과녁을 맞히는 정치를,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제해택을 받습니까? 정말 훌륭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을 보살펴야 할 정권으로서는 많은 점수를 줄 수 없지만, 자신의 지지층에게 매력 있는 정치를 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아낌없이 불러내는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줘야 되고, 이 점이 한나라당이 힘을 발휘하는 강점이고, 이 점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민주주의를 자신의 생활 개선을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 해보고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 지지층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부유층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친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당이 가장 못하고 있느냐,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동네를 분석해보면, 투표율이 낮지만 정말 눈물겹도록 민주당을 찍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겠습니까. 1%, 0.1%가 주효한 측면이 되어서 찍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99%의 아낌없는 지지로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눈물겹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네일수록 투표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걸로 유추해볼 때 그 동네에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물론 한나라당 득표도 나오겠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득표율이 더 나올 것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진보정당은 어떤가. 아직 서로 임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서로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선은 임자를 만나기 위해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누굴 대변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들을 대변해준다고 알아보고 있는가, 이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없을 듯합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자신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은 어떤가. 아직 서로 임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서로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선은 임자를 만나기 위해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누굴 대변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그들을 대변해준다고 알아보고 있는가, 이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뉴타운 재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용산참사에서 뼈저리게 겪었습니다만, 결국은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동네를 부유한 동네로 바꾸는 사업' 이고, 그 동네 주민을 교체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던 2/3에 달하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셋방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거나 아파트에 전월세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서민대청소 사업' 인데, 정치적으로는 투표를 잘 안 하고 투표를 하면 그래도 야당을 찍는 사람을, 투표를 열심히 해서 한나라당으로 몰아주는 주민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도, 이 뉴타운 특별법을 발의했던 사람은 여대야소일 때의 민주당 개혁의원들이었어요.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 재개발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냐. 현재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배정해놓은 어마어마한 예산의 뉴타운 사업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서울이 어떤 도시로 변해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이 대부분, 투표를 열심히 하지만 특정 정당만을 찍는 이런 도시로 변해갈 때, 대한민국의 결정권은 서울에 있는데 그 앞날이 굉장히 끔찍하단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저 스스로도 해명이 안 되지만 발견한 통계를 얘기 안 할 수도 없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바로 종교문제였어요. 부동산이 부를 대표하는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학력과 부동산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길도 학력-부동산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가난할수록 절대자의 위로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왜 이런 것인지, 대한민국 종교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대목을 앞으로 사회학자들이 조금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집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 차이가, 수도권과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기에 비수도권의 경제적 계층 차이는, 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어떨까

지금까지 수도권을 보았는데, 이것이 비수도권에서는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 워낙 질문도 많았고 스스로도 숙제였기 때문에, 책을 낼 때 비수도권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는 각 지방 선관위에서 자료를 내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곳은 아예 자료도 안 내고 그래서, 2004년 총선 자료만을 가지고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 같으면, 호남권은 한나라당 평균지지율이 3%입니다. 이건 뭐 비교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이죠. 영남권은 2004년의 경우 민주당 득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설명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 아무 집이나 하나 팔고 비수도권에 가면 집을 4채 살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가격만 비교를 해도,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하면 의미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은 저기 이태원에 이건희 회장께서 사시는 곳인데 그 집 한 채가 120억 원이라고 하는 반면, 제일 싼 집은 강원도에 있는데 집 한 채가 9만원이니까요.

비수도권에서는 집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런 차이가, 수도권과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기에 비수도권의 경제적 계층 차이는, 주택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들여다봐야 볼 수 있습니다.

권역별 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분석대상 3,537개 읍면동 기준, 단위 : %)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우리당	민주노동	기타
전국	60	36	45	13	6
수도권	60	36	46	13	5
영남권	61	53	30	14	4
호남권	61	3	81	12	4
충청권	57	25	44	12	19
기타	59	39	44	13	5

영남권에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살고, 호남권은 10%가 안 되고 충청권도
그 정도인 반면에 수도권에는 48%로 절반 정도가 살죠. 수도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절반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전국 3,537개 읍면동별의 특성과 투표 패턴 분석 결과

		주택소유 가구	다주택 가구	아파트 거주가구	1인 가 구	(반)지하등 거주가구	대학이상 학력자	종교 인구	투표율
전 국 (3,537)	투표율	●						●	
	한나라							●	▲
	민주당				▲			●	▲
	민노당			●	●		▲		
동 (2,129)	투표율	●	●	●			●	●	
	한나라	▲	●					●	▲
	민주당	▲	●		▲			●	▲
	민노당	▲						▲	

● 는 상관관계가 뚜렷함을, ▲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제한적임을, 공백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함.
※ 전국 3,573개 읍면동(2005 기준) 가운데 분석이 어려운 36개 읍면동 제외 / 강원도와 제주가 포함됨.

그러나 한 가지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전국의 3,500개가 넘는 읍면동에서 주택소유 가구 비율과 투표율의 관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의 소유주가 많이 사는 동네는 투표를 열심히 하고 무주택자가 많이 사는 동네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전국의 모든 동네에서 다 똑같이 나타났어요. 종교도 상관관계가 높아서, 종교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에 따라서 투표율에 차이가 났습니다.

영남권에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살고, 호남권은 10%가 안 되고 충청권도 그 정도인 반면에 수도권에는 48%로 절반 정도가 살죠. 수도권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절반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였던 상당히 선명한 현상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느냐 그런 문제를 한 번 고민을 해봤어요.

분석대상인 3,537개 읍면동 중에 2,129개는 동입니다. 읍과 면은 농촌지역이지만, 동은 시골에 있더라도 도시적 특성을 갖는 동네죠. 이 동에 국민의 80%, 유권자의 80%가 삽니다. 그리고 이 동만을 분석해봤더니, 수도권에 가까운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죠.

주택소유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가구와 투표율, 다주택가구 비율과 정당득표비율,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주택소유가구 비율과 정당별 득표율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지표들이, 전국권 분석과는 다르면서 수도권에 오히려 더 다가가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포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서울이 태양이고 수도권이 태양 주위에 있어서, 서울이 이글이글 타는 시뻘건 색이면 수도권은 분홍색 정도, 그리고 동 지역 도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연한 분홍색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도시가 한 80%라고 치면, 수도권에서 발견되는 상관관계가 2/3 이상의 설명력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수)

질문자 1 **지역별 신분관계를 좀 봤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현재 앞에 남은 지자체 선거에서 저 성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분석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손낙구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앞에 선거들을 보면 선거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됩니다. 올해의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하는, 다른 선거와는 다른 성격이 있고 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할 것인데, 이것이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가 정당별 득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도 많이 확산됐지만, 그렇다고 다른 정당에 대한 마음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것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도 봐야할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의 양상이 이 자료의 기준이 되고 있는 2006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동네별 특성에 따른 투표율이나 정당별 득표율의 상이함, 이런 것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질문자 2 **이번 지표 중에서도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1인 가구가 투표율이 낮기는 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비율도 낮다고 하면, 그런 1인 가구를 좀 더 따져볼 방법은 없을까요.**

손낙구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도시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1인가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으로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인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에서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주지로 보면 주로 2호선에 모여 살고 있고, 다세대주택 밀집형, 고시촌 밀집형, 대학가 거주형 등 여섯 가

정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걸 주택보급의 분자에 넣어 주택보급률을 낮추는 데 활용하며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집을 무조건 더 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로 나눠지는데, 특히 대학가들은 1인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고, 셋방 사는 비중도 높습니다. 골드싱글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형편이 어렵고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수도권 밖에서 들어온 인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걸 주택보급의 분자에 넣어 주택보급률을 낮추는 데 활용하며 집을 더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주택정책에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죠. 집을 무조건 더 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수도권의 1인가구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시골에 사시는 주택소유자들이 많은 양상입니다.

질문자 3 **학력 뿐 아니라 종교도 같이 간다는 데에,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이, 수도권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천주교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손낙구 자료를 통해 드러난 바로는, 일단 투표율이 높은 10군데와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은 10군데는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도권 1,164개 중에서 일관되게, 투표율–한나라당 득표율–천주교 신자 비율이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개신교도 같이 가지만, 그 비율이 가장 정직하게 따라가는 것은 천주교입니다. 불교는 거꾸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득표율과 투표율이 낮은 동네에서 불교신자 비율이 높은 양상이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불교가 그렇게 같이 갑니다. 전체 종교인구 비중이 투표율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종교별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질문자 4 **좀 전에 반지하나 옥탑방, 그런 주거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말고 뭐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권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손낙구 지하 거주공간은 이제 각 나라의 실태 조사까지는 제가 안 해봤고, 선진국의 경우는 지하거주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논문들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부터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벌인다든가 해서,
이 분들이 땅 위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도시화의 역사니까 도시로 인구가 밀집되어서 공간이 부족하게 된 이런 문제에 공통적으로 부딪히니까, 지하 공간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만이 아니고 피트니스 시설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추세인 것인데, 우리나라 지하거주공간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유래로 보면,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남침에 맞서서 방공호를 파라는 지침을 정부에서 내려가지고, 칠십 몇 년도인가부터 신축허가를 내줄 때 방공호를 지하에 파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서 생긴 공간이에요. 그러다 80년대 초반에 1차 재개발 같은 게 시작이 돼요. 그 전엔 전라도, 경상도에서 서울 들어와서 시유지인 무허가에 많이 살았는데, 이걸 이제 밀어내거든요. 이게 10년 간 쭉 일어나고 대규모로 되면서, 밀려난 사람들이 대부분 외곽으로 갔는데, 외곽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자기가 살 공간을 구하다가 이 불법시설인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공호로 시작한 것이 불법거주시설로 바뀌었던 걸, 나중에 합법으로 양성화 시켜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방공호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 차원에서 거의 공공임대주택을 하거나 주거 임대조건으로 하거나, 대부분이 인권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니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부터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게 다 서울과 경기도의 문제니까 차기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벌인다든가 해서, 이 분들이 땅 위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자 5 **요즘 아파트 불패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를 봐도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계급사회라고 할까 그런 것들의 판이 흔들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그런 정치판도 완전히 흔들려버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야말로 반 토막 난 아파트, 그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들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사들여서 조금 수리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너무 낙관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낙구 사실 부동산불패라는 것이 모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오른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쌓은 바벨탑이죠.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것도 저게 안 오른다고 하면 주민들, 집주인들이 안 하죠. 다만 지금까

역대 정부 모두가 다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인위적으로 펴온 측면이 강한 거죠.
투기가 심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는 투기하고 싸우는 정책을 폈지만, 역대 정권은 어느 정권이나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해왔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버리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바벨탑이 무너지겠죠.

지 30년 동안은 이제 '아, 그래서 난 아파트 안 사고 그냥 전세 살래' 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어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가 배신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역대 정부 모두가 다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인위적으로 펴온 측면이 강한 거죠. 투기가 심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는 투기하고 싸우는 정책을 폈지만, 역대 정권은 어느 정권이나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해왔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버리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바벨탑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강의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어떻게 될지 실무적인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웃음)

다만 이게 떨어져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이렇게 계급까지 구분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거의 중독이 되어가고 있고, 빚내서 아파트 산 사람들 상당수가 중산층인데다, 단순히 주거생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 무너지고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그리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제가 있죠. 이런 갖가지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연구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고 사회 전체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제 아무리 민주정부라도 억제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우니까.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뒤에, 지금 이명박 정부보다 더 심각한 투기 촉진 정책을 폈던 것은 아마도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부동산 거품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빼게 될 경우에 닥칠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치고나가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올라갈 때가 없어 떨어져버린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쉽지 않죠.

질문자 6 **이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해두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낙구 일단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害)가 전혀 없이, 이 문제가 바로잡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 계약기간 2년은 너무하다, 자식을 20살까지 학교 졸업시키는 동안 10번을 전학시켜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전월세 계약기간을 조금 늘려, 최소한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이 10년 정도는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여기까지는 인도주의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바로 거기에 집주인들이 반발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 거품을 빼게 될 경우에 닥칠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은 겁이 나서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치고나가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무슨 큰 부자도 아니니까, 우리도 집주인이면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당연히 생기고 반발이 있고 무리한 희생도 있고,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설득해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에서, 제가 공부해보기로는, 정부정책이 결정적이에요. 정부정책의 변수만 빼도 가격이 이런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도 사실 일반 경기보다 그 순환주기 사이클이 조금 크다 뿐이지, 다 이 자본주의 경제의 곡선을 타는 것인데, 정부정책의 방향만 조절을 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있고, 방법이야 사실 많이 있죠.

참여정부 말기에 했던 금융과 연관된 정책, 그거야 말로 이제 시행착오 속에서 발견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정책이고, 또 세재정책도 한계는 있지만 조세 원칙에 따라서 할 경우에 투기 규제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투기를 촉진하는 개발제도라든지 하는 정책들만 단계별로 잘 손질을 해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센 게 사실입니다. 주택의 절대부족 상태를 이미 벗어난 상태이니까요.

사회자 오늘 민변 월례회, 참 성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성황이었던 이유는 지금 바로 우리들이 느끼는 현재의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서울시 교육감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이 됐고, 경기도 교육감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됐잖아요. 그게 뭐 강남 쪽에서 표가 뭉쳤다는 말도 있지만, 역으로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뉴타운들이 시행되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 경기 외곽으로 가니까, 서울 쪽에서는 부동산 1·2 계급이 두터워지고 거기에서 밀려난 다른 계급들이 경기 쪽에 많이 갔기 때문' 이다. 물론 김상곤 교육감이 잘한 게 크지만, 그런 것도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만간에 부동산 3~6계급들의 투표율을 재고할 수 있는 정책과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변 4월 월례회 여기서 마치겠고요, 2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박 수)

민변의 활동 [공부모임]

『통섭』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2005)

정리 _**좌세준** 회원

일시 : 2010년 5월 18일(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참석자 : 강신하, 김광원, 김선수, 김행선, 이승범, 박찬운, 정연순, 좌세준, 황희석 (가나다순)

발제 : 강신하, 좌세준, 김광원, 정연순

좌세준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고 내용도 만만치 않은 데 약 1시간 만에 발제를 끝냈습니다. 사실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자서전 『자연주의자』(이병훈, 김희백 옮김. 사이언스북스)를 보면, 윌슨이 1975년에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어떤 모임에서 반대자들로부터 얼음물 세례를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윌슨이 주장하는 사회생물학의 논리에 대하여는 찬사 못지않게 비판적 시각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각자 책을 읽으시면서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나가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통섭(Consilience) : 지식의 대통합

김행선 저는 처음에 통섭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서양 과학의 역사가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통섭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큰 줄기를 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느낀 점은 에드워드 윌슨도 어차피 서양 자연과학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자연과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과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쪼개고 분석하고, 검증하는 사고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런 방식이 서구 자연과학자들의 기본인식이었던 것이죠. 반면 동양적 사유, 예를 들어 음양오행이나 주역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우주나 이 세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비과학적이라거나 심지어 미신으로 몰아세우기도 하지만 윌슨이 주장하는 통섭의 원리는 동양 사상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박찬운 사실 윌슨이 말하는 통섭이나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자연과학적 사고와 동양 철학적 사고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물학적인 설명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측은지심, 인의예지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맹자가 그 당시 자연과학적 기초에 의해서 이야기 했다기보다는 인간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 "인간에게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사회생물학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인간에게 그런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적 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그것이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적 사고도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으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양의 자연과학적 사고와 동양철학의 그것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세준 최재천 교수도 이 책의 제목 'Consilience'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불교나 성리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인 '통섭'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서문에서 쓰고 있죠. 예를 들어 맹자는 우물가로 기어

사회생물학은 구석기 시대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인간들에게 본성이 개체로서의 인간의 생존이나 진화, 공동체의 존속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러한 본성은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다가 후세의 인류들에게도 발현되어 나타나는 ' 후성규칙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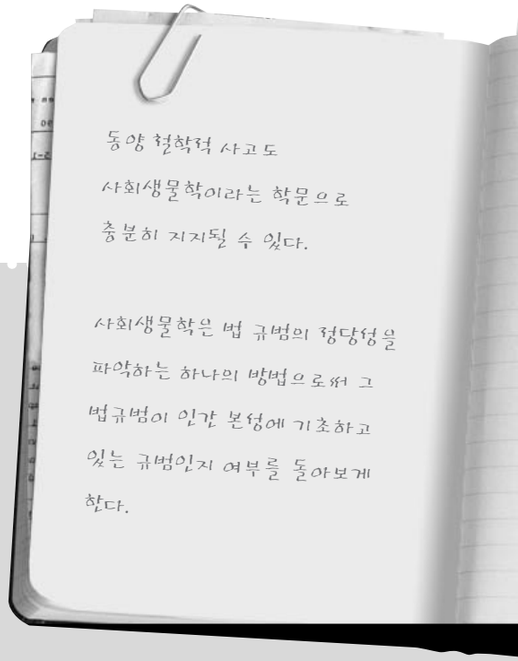

가는 아이의 비유를 통해 측은지심을 설명합니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물로 기어들어가려는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타고난다고 본 것이죠. 직관적으로 인간의 본성, 본능을 파악할 때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윌슨은 예컨대, 구석기 시대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인간들에게 그러한 본성이 개체로서의 인간의 생존이나 진화, 공동체의 존속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러한 본성이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다가 후세의 인류들에게도 발현되어 나타나는 ' 후성규칙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책의 원제인 'Consilience'의 번역어로 사용된 ' 통섭 '이라는 단어는 그 기표 속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물학의 시선으로 보는 법규범의 정당성

박찬운 저는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차원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상학이죠. 현상을 보면서 해석하는 정도로 법학을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4, 5년 전부터 '왜 법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법 이전에 윤리나 도덕이 있을 것인데 '윤리, 도덕이 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법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결국 이르게 되는 하나의 화두가 뭐냐 하면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인간 본성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규범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본성인지, 아니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놓은 전혀 이질적인 규범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규범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인간 본성에 기초한 규범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호주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재천 교수가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이 장안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2003년이에요, 그게. '미토콘드리아 유전설' 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한마디로 굉장히 '쇼킹' 했어요.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논리였지요. 최재천 교수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계혈통주의만 있을 뿐이지 부계혈통주의는 없다. 그러니까 호주제는 잘못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생물학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생소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호주제 폐지의 논리로서는 상당히 기여한 점이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사회생물학의 논리를 살펴보면 당시 최재천 교수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될 여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설 입장에서는 최재천 교수의 얘기가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계중심주의적 입장에서의 규범은 도대체 사회생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윌슨의 『인간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을 보면 "인류 문화의 3/4 이상은 부계중심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윌슨은 왜 부계 중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성적으로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한 것이 결국에 가서는 규범화되고 결국에는 여자를 강압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생물학적 입장에서 부계중심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발견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을 존중해 주고 인권을 보장해주고, 민주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든 것이 결국 진화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선택된 것이다. 윌슨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사회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의 시대가 오히려 자연 선택되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이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죠. 이런 점에서 사회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외에도 동성애자 문제 같은 것도 사회생물학적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동성애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사회생물학은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를 설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성애자를 우리가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인간사회에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정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생물학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인권의 문제를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슬람 여성의 히잡 착용이나 명예살인 같은 현상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면이 발생한다. 그런 면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생물학적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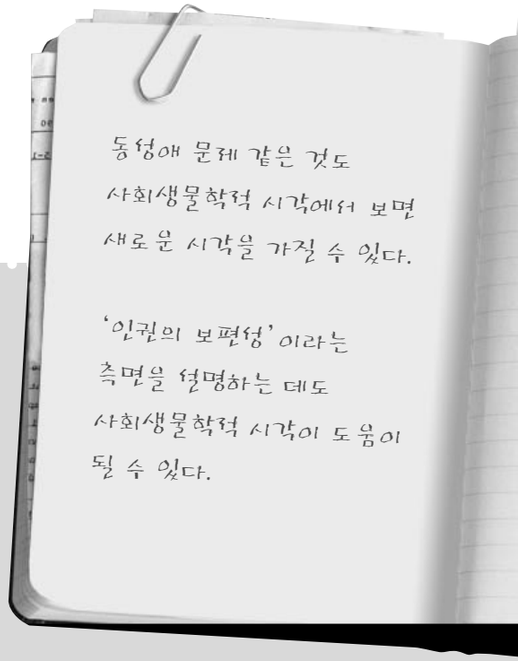

인권과 사회생물학

좌세준 윌슨은 이 책에서 문화상대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상대주의가 통합된 인간본성이라는 부분에는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론에서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슬람 여성의 히잡 착용이나 명예살인 같은 현상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면이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설명하는 데도 사회생물학적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데요.

박찬운 그렇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문제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가렛 미드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렛 미드의 스승인 프란츠 보애스, 우리가 잘 아는 루스 베네딕트,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 인류학자로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들이 대단히 비과학적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하지요. 대표적으로 마가렛 미드가 사모아 섬에서 20대 전후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조사했다고 하는 데, 사실 그런 서술이 나중에 당시 관찰 대상이었던 주민들의 증언이나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빼고 보더라도 사실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을 극단화하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의 핵심 부분만큼은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행선 저는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 할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듯이, 사회생물학적 시각을 일반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물학 이론이 '우파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규범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사회생물학적인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규범이라든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규범이라야만 정당성을 갖는 규범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회생물학은 문화까지도 유전이나 진화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 이런 접근이 사회생물학의 지나친 극단화가 아닐까하는 거죠.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인 이상, 어느 하나의 프리즘만 가지고 인간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박찬운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사회생물학이 어떤 규범이나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면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죠.

예컨대 근친상간 금지의 규범을 설명할 때, 이 책에서도 웨스트마크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근친상간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처럼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다"라고만은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지요. 근친상간 금지라는 규범이 생성된 원인을 단지 문화적 원인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터마크 효과와 같은 생물학적 접근과 함께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회생물학의 시각이 여러 방면에서 시사점을 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생물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

좌세준 사실 윌슨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공식 석상에서 반대자들로부터 얼음물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유전자 결정론 아니냐"는 비판은 학계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굴드나 르원틴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인 비판론자였지요.

하지만 윌슨의 이후 저작들에 대한 분석을 보면 윌슨의 이론이 단순히 '유전자 결정론'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이 책에서도 맑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계급이론 등에 대해서는 조금 냉소적인 것이 사실이죠. 좌파 이론가들이 윌슨의 이런 시각을 보면 속된 말로 '같잖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윌슨이 "후성규칙?, 그거 개념조작 아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번역한 최재천 교수도 자신의 스승인 윌슨에 대해 '생물학적 환원주의'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무의 유비'를 들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에도 굉장히 유전자 결정론에 근접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도 있다. 전반적으로 윌슨은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결정론에 가깝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생물학도 진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운 사회 생물학에도 굉장히 유전자 결정론에 근접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윌슨은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결정론에 가깝다고 이야기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차이는 두 사람의 '레토릭의 차이' 라고 봐요.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쓴 것이 1976년입니다. 윌슨의 『사회생물학』은 1975년에 나왔지요. 두 권의 책이 동시에 나왔어요. 사실 저는 「사회생물학」 원전을 보지는 못하고 이병훈 교수가 번역한 축소판 번역본 두 권을 보았는데, 이 책은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동물생태학을 1장부터 19장까지 쓰고 맨 마지막 장 20장에서 인간에 대해 쓰고 있죠. 사회생물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윌슨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거기서 딱 나타납니다. "인간도 결국에 가서는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술 방법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굉장히 학문적으로 썼습니다.

반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물론 학문적이긴 하지만, 윌슨에 비하면 굉장히 선언적이고 선동적인 입장에서 썼어요. 도킨스는 그 이후의 저작을 보더라도 윌슨의 주장보다는 훨씬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최신작인 『만들어진 신』같은 책을 보면 영국에서의 사회생물학 논쟁에서 항상 도킨스는 최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킨스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방식의 단점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론을 극한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입장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강신하 그런데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서양에서 보는 관점, 동양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 동성애자의 문제도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명할 때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기도 하잖습니까.

이처럼 명백히 대립되는 관점이 있는데, 사회생물학적 관점 또한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다양한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찬운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킨제이의 보고서가 유명하지요. 킨제이는 보고서에서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비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잖습니까. 동성애의 문제를 선언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 본성에 반한다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 반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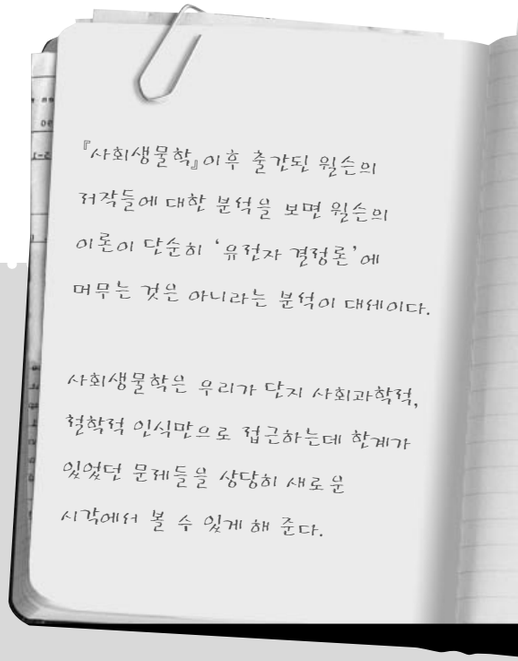

강신하 이 책에서는 초월론적 세계관과 경험론적 세계관 또는 초월론적 윤리와 경험론적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친상간, 동성애 등의 문제를 초월론적 윤리나 종교에서의 윤리에 따른 판단을 배제하고 경험론적 윤리나 세계관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닐까요.

박찬운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연관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근거라든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규범, 철학, 고대로 내려오던 문화적 요소들을 분석해 내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정리해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후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푸코의 『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된 『성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푸코는 근친상간 금기나, 일부일처제도 등의 근원을 기독교의 역사에서만 찾지 않고 그 후면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BC 4세기경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저작을 통해서 나오는 규범의식, 그 다음에 기독교가 발현하기 시작하는 AD 1세기 전후의 고대문헌을 추적해서 규범 논리를 하나씩 하나씩 도출해 냈는데, 그런 관점에서 푸코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삼십여 년 전에 글을 썼는데, 제가 사실 사회생물학을 읽어가면서 푸코의 그 논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푸코가 만약에 사회생물학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런 글을 쓸 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단지 철학적 인식만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문제들을 사회생물학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죠.

윌슨은 인간이 자기만의 생존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윌슨이 '실존적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실존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질문해봐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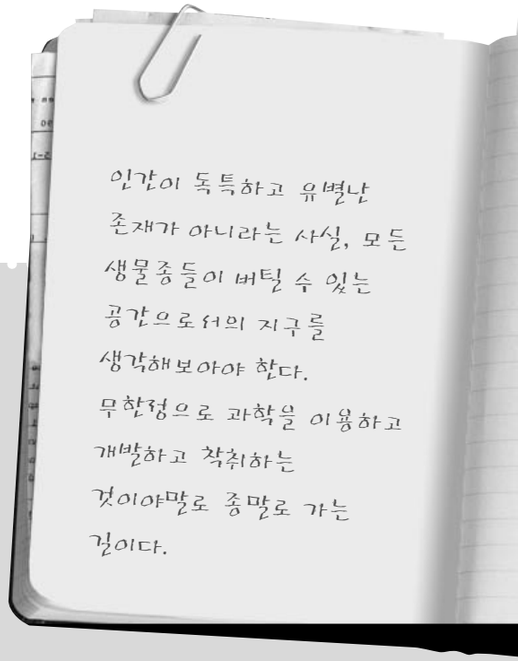

과학과 윤리 :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신하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사회생물학이 지구상의 모든 원리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다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통제하는 사회로 가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인간은 겸허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요.

정연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윌슨은 자연적 진화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만의 생존을 생각하는 '면제주의자'의 관점에 서게 되면, 인간은 과학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 알 수는 있겠지만, 자기 본성의 그 부분에만 몰두하면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 예컨대 '유전자 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윌슨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실존적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도, 자신의 실존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질문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독특하고 유별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생물종들이 버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구를 생각해보아야 하고, 무한정으로 과학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이야말로 종말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실존적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윌슨은 과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겸손한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승범 면제주의자의 입장은 이 책의 첫 장에서 얘기했던 과학주의의 낙천성을 가진 계몽주의적 자세랑 연결되는 것 같고요, 윌슨의 기본적인 생각과 보수적 실존주의와는 사실 상충하는 면이 있기는 하죠. 전형적인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환원하고 통제하는 어떤 변수를 앎으로써 더 많은 복지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전체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번식하고 적절하게 쓰자' 라는 주의인데, 실제로 물리학적인 핵융합만 실현되더라도 에너지 문제는 환경과의 충돌 없이도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윌슨이 맨 마지막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건, 사실 초월적 윤리론의 태도와 똑같거든요. 끝까지 과학적으로도 탐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정답이 끝났다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에서 뒤틀린 자세를 취하는 거죠. 사실 면제주의자인 입장에 선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럴 듯한 게 많아요.

지금 온난화라고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속된 말로 '생쇼'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지구의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친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서,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큰 포럼들을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것이 말똥문제였다는 거죠. 도시가 거대해지고 누구나 다 말을 소유하다보니 말똥이 엄청나게 쌓이는 바람에 우리 인류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바로 해결돼 버렸다는 것이죠. (웃음)

김광원 그런데 사실 윌슨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제들,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예들을 보면 하나 같이 심각한 것들입니다. 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박찬운 사실 지금 얘기되는 문제들은 제레미 리프킨이 쓴 『엔트로피』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리프킨의 최초 작품인데, 삼십대 초반에 쓴 작품이 지금까지도 고전이 되었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우리 공부모임에서 한 번 시간이 되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통섭의 시대 :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박찬운 화제를 약간 바꾸어 보면, 오늘 우리는 사회생물학을 중심으로 통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회생물학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문과 학문의 벽을 깨면서 그걸 관통하는 실마리를 잡아나간다는 관점에서라도 통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최재천 교수의 예를 들어 보죠. 최재천 교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전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가 『살인의 진화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내

윌슨은 '유전자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성규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과장치를 만들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한다. 윌슨이 말하는 '후성규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용이 뭐냐 하면 1800년대 초에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오는 살인사건 분석을 한 거예요 한 2백건 정도를 서울대 규장각에서 김아무개라는 연구관이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진화심리학으로 연결을 시켜서 함께 학제간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낸 것이 『살인의 진화심리학』인데, 거기에서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살인의 동기라던가 하는 것들을 한 200건 정도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2백 년 전의 살인사건도 현재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진화심리학으로 그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최교수가 인용하는 사건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여자가 남편을 죽였는데, 독극물을 먹이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목을 졸라서 죽인 사건이예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했더래요. 독극물을 먹이고 남편을 죽이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잔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관리가 양형을 하는데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살인 방법을 보면, 이건 격정적인 범죄도 아니고, 남편이 때리니까 요즘 말로 정당방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극형을 처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대요.

도저히 변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인데, 최교수는 이 사건에서 "충분히 여자를 위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논리가 어떤 것이냐", 답은 진화심리학을 연구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진화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강건한 남자를 죽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여자가 남자를 죽일 때는 반드시 모살(謀殺)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이는 방법도 확실하게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반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왕 죽이기로 마음먹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의 경우 모살일 수밖에 없고 범행수법도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범죄의 경우 단지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승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자유의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윌슨이 보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방금 살인을 하는 여성처럼, 모든 걸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걸 필연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과연 법에서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자유의지를 부인하게 되면 인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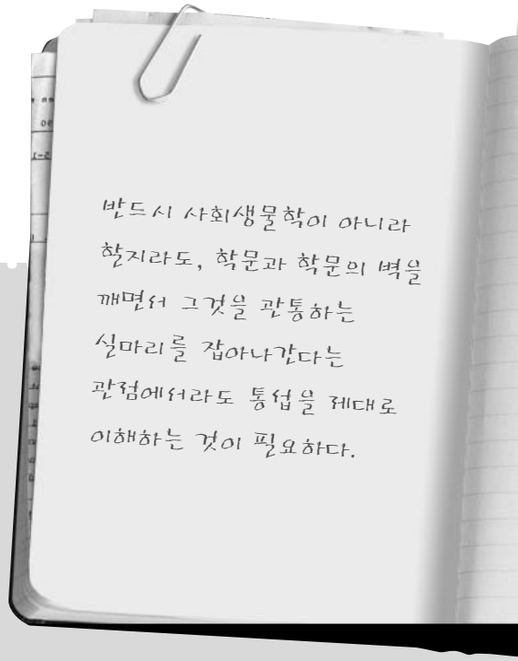

박찬운 그 부분은 윌슨이 사용하는 '후성규칙'의 기능과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윌슨이 자기 책이나 다른 글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사회생물학을 유전자 결정론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윌슨은 '유전자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성규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과장치를 더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윌슨이 말하는 '후성규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러한 경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향으로 가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막는 방법은 문화, 교육일수도 있고 환경일수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그 경향성을 '비율'로 봅니다.

경향성이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유의지론 쪽으로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이나 환경에 의한 통제 이런 입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윌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결정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우리는 생물학적인 경향성을 상당부분 다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좌세준 예.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특별히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박찬운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동정

7(À î —ì ²

글 _**고윤덕** 회원

1 울릉도라 ….

"울릉도에 한 번 놀러오세요"라는 내레이션으로 끝난 다큐멘터리를 본 것이 지난겨울이었다. 울릉도에서 태어나 도동항 일꾼으로 살아가는 지적장애인 '상호 아저씨'(일흔이 넘은 나이지만)가 주인공이었는데, 오징어, 호박엿과 함께 울릉도 3대 명물이라고 한다. 방송을 보는 내내 배경이 되는 울릉도 도동항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바쁘게 오가는 여객선과 관광객들 사이로 노인의 시간은 띄엄띄엄 흘러갔고, 나는 아름다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도동공원 벤치에 앉아서 해가 뜨고, 배가 들고 나고, 다시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5월 첫째 주, 나는 울릉도에 다녀왔다.

막연히 도동항의 풍경과 다큐멘터리의 감성만을 생각하고 선뜻 여행에 따라나선 나는, 1박2일의 빡빡한 일정이 시작부터 약간 당황스러웠다. 새벽 5시에 산악회 버스를 타고 묵호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그리고 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울릉도에 간다면 어쩌면 관광객들만 구경하고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우물쭈물할 새 없이 우리 일행도 서둘러 아침을 먹고, 여객선의 표를 끊고, 멀미약을 챙기는 등 잽싸게 움직여야만 했다.

오고가는 시간만 총 12시간(서울에서 묵호까지 버스로 3시간, 묵호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3시간)이 걸리고, 독도 관광과 성인봉 산행, 울릉도 육상 관광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모두 22명이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8명, 법무법인 상록에서 9명, 박태주 교수님 내외분과 심재환 변호사님 가족이 동참했다. 우리 사무실 전영식 변호사님 막내딸 성현이를 포함하여 어린이가 6명이었다. 산악회와 연락하여 숙소와 일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여행 준비는 장주영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다.

2 쾌속선 '씨–플라워호'를 타고

울릉도까지는 쾌속선 '씨–플라워호'를 타고 간다. 3시간 정도 간다니 다들 멀미 걱정에 부산을 떨었는데, 날씨가 좋고 파도가 거의 없어서 가는 내내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사실 갑판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사진도 찍고 갈매기에게 새우깡도 던져주는 낭만적인 광경을 기대하기도 하였지만, 이 배는 아예 갑판이 없고 사방이 창문으로 된 방에 의자만 빼곡히 들어찬 모습(정원이 400명이 넘는다고 한다)이라서 자리를 잡자마자 눈을 붙였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우리 일행이 독도 여행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원래 여행계획에 독도 관광이 포함되어 있었고 산악회 측에서는 울릉도로 가는 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묵호로 오는 버스에서 산악회 안내자가 독도에 가는 배에 자리가 없어서 독도로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날 오후 5시에 울릉도를 출발해서 독도를 다녀오는 배에 남은 자리는 12개였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일행 22명 모두가 독도에 갈 수 없어 12명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래부터 나는 독도 관광에는 뜻이 없었으므로(나는 그때도 다큐멘터리 속 도동항의 모습밖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조적인 입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우리 일행의 독도 사랑은 아주 뜨거웠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독도 방문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민경한 변호사님의 주장에 수긍이 갔다. 일행에 포함된 변호사들의 수만큼 주장과 항변이 오고 갔고, 이 지난한 논의는 울릉도에 도착한 이후까지 이어졌다. 무관심파 여자 변호사 3명은 일찌감치 제외되었고, 자라나는 새싹인 아이들 6명과 보호자로 어른 6명이 가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던 장 변호사님과 사모님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3 울릉도 입도

배 안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카메라의 셔터 누르는 소리가 났다. 바다밖에 보이지 않던 창밖으로 드디어 울릉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배가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것인지 창밖의 섬이 조금씩 각도를 틀었다.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아름답다.

배가 도동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부산스럽게 내릴 준비를 한다. 나도 보조를 맞추어 서둘렀다. 방송에서 보았던 '그' 도동항이었다. 멀미에 특효라는 더덕즙을 파는 간이판매대가 늘어서 있고, 말린 오징어 등 특산물을 파는 좌판들, 중간에 작은 관광안내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자동차 시동 소리,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 그리고 '끼룩'대는 갈매기의

울 음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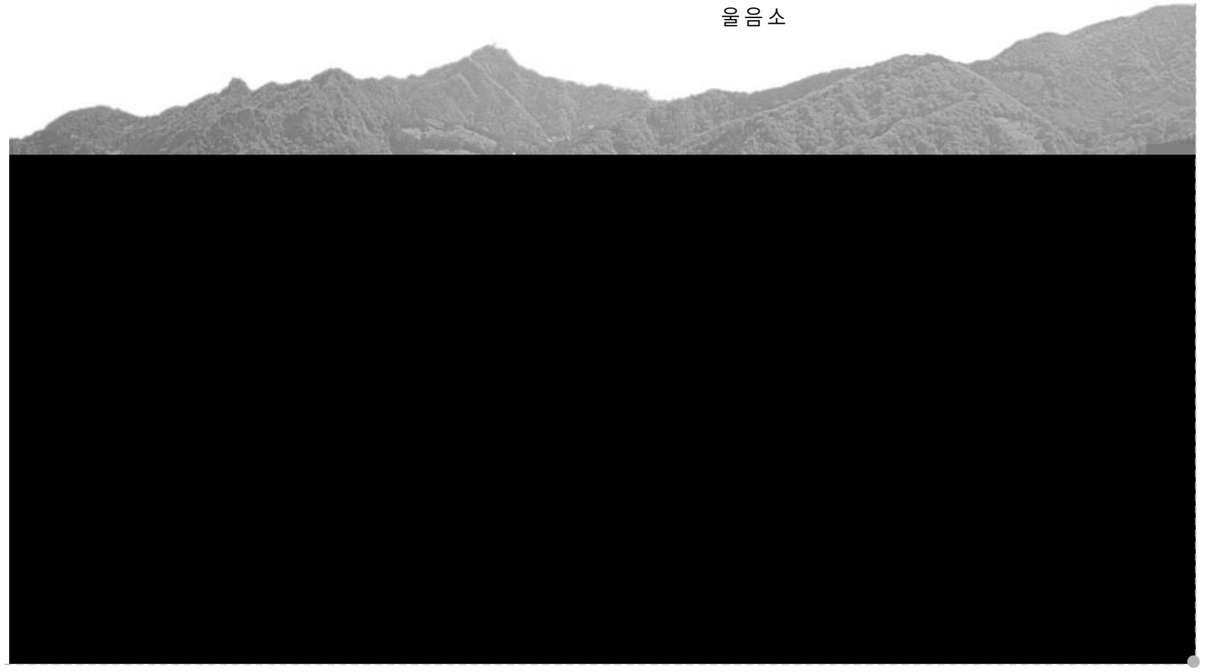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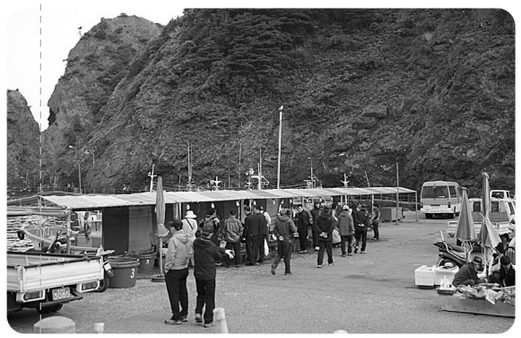

리로 시끄러웠고, 방금 배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작은 항구가 복작거렸다.

날씨는 쾌청했고, 오랜 이동을 끝내고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기분도 점점 좋아졌다. 일상에서 단절되는데 한 여섯 시간쯤 걸리는 것일까. 담벼락에 꾸며진 다리 8개 달린 오징어 부조(?)도 나의 울릉도 입도를 반기는 듯했고, 때마침 걸려온 친구로부터의 전화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부러운 탄식까지 여행의 분위기를 띄워 주었다.

4 울릉도 육상관광 B코스

우리는 도동항 입구에 있는 여행사 건물 앞에 모여 간단하게 일정을 전달받은 다음, 예약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해안선을 산책하였다. 그리고 선발된 12명이 독도로 출발하기 전까지 모두 미니버스를 타고 울릉도 육상관광을 하였다.

육상관광은 A코스와 B코스로 나뉘는데, 첫날은 도동을 중심으로 동북방향인 저동과 내수전 그리고 봉래폭포 등을 둘러보는 B코스를 돌아보기로 하였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울릉도에 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 일행은 울릉도의 군화(郡花)나 군목(郡木) 등을 묻는 운전기사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운전기사가 해주는 설명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여행에 임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다들 울릉도에 관한 책 한 권씩은 읽고 온 것 같았다.

도동항을 출발한 버스는 좁고 경사진 도로를 쌩쌩 달린다.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면서 쉬지 않고 울릉도의 식물이며, 바위, 지명 등에 대해 설명을 한다. 우리는 울릉한마음회관, 울릉도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울릉종합고등학교를 거쳐 저동을 지나 내수전 일출전망대에 도착했다. 모두 버스에서 내려 20분 정도 올라가니 전망대가 나온다. 바로 앞에는 죽도(울릉도의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으로 노총각이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그 위로 관음도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도동등대와 저동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돌아오는 길에 봉래폭포를 둘러보았다.

5 맛있는 저녁을 먹다

선택받은 12명이 독도로 떠나고 나는 김선영, 이새나 변호사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도동항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녁메뉴는 울릉도 특산 홍합밥. 그러나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홍합밥이 아니라 명이나물 장아찌였다. '명이나물(얼룩산마늘)'은 울릉도 특산물로 육지에서 나는 산마늘과 비슷하나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이 명이나물을 채취하여 간장에 절인 명이나물 장아찌는 마늘향이 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었다. 명이나물 장아찌는 식당에서 따로 팔기도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명이나물 말고도 매 끼니마다 부지깽이 나물, 삼나물, 고비나물 등 세, 네 가지 산채가 밑반찬으로 나와서, 나물을 좋아하는 내게는 항상 진수성찬이었다.

식당을 나와 도동항을 어슬렁거리다가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의 해안선을 둘러보았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해안 산책로에 자리 잡은 주점의 불빛은 하나 둘 켜지고 있었다. 술안주인 횟감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길, 삼삼오오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여유롭게 느껴진다. 항구 안쪽까지 거침없이 들어와 해산물이 담긴 통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갈매기들의 도도한 모습도 이채로웠다. 나는 도동공원 벤치에 앉아 항구를 바라보면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이후 다른 곳을 구경하고 돌아오시는 심재환 변호사님 일행(독도에 가지 못하신 분들)을 만났고, 변호사님들이 호박 막걸리와 더덕무침을 잡수시는데 끼어서 또 맛있게 먹었다. 호박 막걸리는 적당히 달달한 맛이었고, 향이 거의 없고 연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울릉도의 더덕도 별미였다.

6 이튿날 : 성인봉 산행

다음날은 성인봉 산행이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도동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해서 KBS중계소를 거쳐 성인봉(해발 986.7m)에 오른 후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가장 일반적인 코스를 택했다. 일행 중 일부는 먼저 KBS중계소까지 차로 이동해서 출발하기도 했고, 등산을 하지 않고 차로 나리분지 관광을 하기도 하였다.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고, 초반 급경사를 지나자 산봉우리와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경치가 나타났다. 김선영 변호사는 가끔 주말에 함께 등산을 다니고 있어 발걸음이 가벼웠고, 이새나 변호사도 중미산의 아픈 추억을 극복하고 힘차게 올라갔다. 전날 독도에 다녀온 심재환 변호사님 큰아들도 씩씩하게 앞서 나간다. 성인봉까지 0m라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예상시간을 가늠하여 말을 했더니 "어른들은 왜 산을 시간으로 올라가요?"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하였는데, 어린 아이의 눈에는 산을 그저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는 모습이 아쉬웠던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셈하는 것을 특이하게 본 것인지. 어쨌든 가장 씩씩하게 앞서 나갔다.

야생화에 조예가 깊은 박태주 교수님 내외분과 장주영 변호사님 내외분은 산행을 하면서 만난 온갖 꽃과 풀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으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다. 천연기념물인 원시림(우산고로쇠나무, 섬피나무, 너도밤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원시림 군락지)을 지날 때는 울창한 숲과 나무가 자아내는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정상까지 약 2시간이 걸렸고, 나리분지와 동쪽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서 잠시 경치를 구경하였다. 알봉, 미륵봉, 송곳산 등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다. 나리분지로의 하산 길은 1㎞ 이상 경사가 심한 계단을 내려와 완만한 계곡으로 길게 이어졌다. 나물을 채취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나리분지에 있는 식당에 도착한 것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일행을 기다려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육상관광 A코스를 돌았다.

7 육상관광 A코스, 기타

육상관광 A코스는 해안을 따라 이어졌다. 역시 운전기사가 가이드를 하였는데, 오른쪽을 봐라, 왼쪽을 봐

라, 바위의 구멍을 찾아봐라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아쉽게도 나는 아무리 설명을 듣고 뚫어져라 바위를 살펴봐도 어째서 그 바위가 코끼리를 닮았는지, 거북이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송곳산 성불사, 현포의 목교, 황토구미, 만물상 전망대 등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둘러보았다.

운전기사는 우리를 호박빵, 호박엿을 만드는 공장이며, 마가목 술을 파는 상점 등에 내려주면서 은근슬쩍 특산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하였는데,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저마다 집에 가지고 갈 특산품들을 구매하였다.

2시간 정도의 육상관광을 마치고 다시 도동항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예약한 묵호행 배가 17:30에 출발하므로 그 전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서울로 가는 중간에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서 각자 저녁을 먹고 여객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다.

막내 이새나 변호사가 갑자기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중국 음식점을 찾다가 숙소에서 도동항으로 나오는 골목길에 자리 잡은 '독도반점'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갑자기 독도 여행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는 '독도반점'에서 해물 자장면과 홍합 짬뽕으로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8 울릉도를 기억할 마지막 모습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동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치듯 '상호 아저씨'를 보았다. 매우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는 방송에 나왔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유히 도동공원 쪽으로 가고 있었다.

여행사 건물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다가 작은 매대를 두고 앉아 더덕즙이며, 커피 등을 파는 할머니에게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셨다. 매대를 차려 음료수를 파는 상인들은 많았지만 이 할머니의 것이 첫 번째 자리였는데, 할머니에게는 음료를 파는 일보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본업인 듯하였다. 도동 공원 한편의 파출소 앞에는 진갈색 복슬강아지 한 마리가 곤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사진을 찍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잠만 잔다. 옆에 있던 주인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과격한 애정표현으로 기어이 놈의 잠을 깨워버렸다. 내가 울릉도를 기억할 섬의 마지막 모습은, 일요일 늦은 오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방금 잠에서 깬 강아지의 나른함이 느껴지는 도동항의 풍경이었다.

이틀간의 울릉도 여행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분주하였다. 하지만 마음먹기 쉽지 않은 여행길이니 만큼 많은 것을 보고 가야겠다는 일행들(일부 제외)의 열정에는 존경심을 느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행의 진정한 힘은 힘들고 복잡한 일상이라도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다. 울릉도에 오기 직전까지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돌아가면 다시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 5월 2일 17:30 울릉도 도동항. 나는 괘속선씨-플라워호를 타고 나의 일상이 기다리는 곳을 향하여 출발했다.

성명 및 논평

아래 내용 전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minbyu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획일적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0.05.24

성 명 서 G 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2010.05.19

성 명 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거다! 2010.05.03

성 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악의적 명단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2010.04.30

성 명 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2010.04.30

고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2010.04.22

논 평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에 따른 논평.끝나지 않은 과거사, 긴급조치를 벌하라 2010.04.30

논 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010.04.27

논 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04.26

논 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2010.04.21

논 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2010.04.09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2010.05.28

의 견 서 야권 단일후보의 타 후보 지원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5.24

의 견 서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2010.04.30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16, 원유철 의원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2010.04.27

의 견 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 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0.04.26

의 견 서 무상급식 서명운동 선거법 위반 여부 의견서 2010.04.08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0.05.28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10.05.27

공동보도자료 유엔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기자회견에 따른 한국 NGO의 입장 2010.05.17

보도자료 민변, 「단체 등의 선거쟁점관련 활동방법 안내」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2010.05.03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2010.04.29

보도자료 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2010.04.27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2010.04.22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2010.04.22